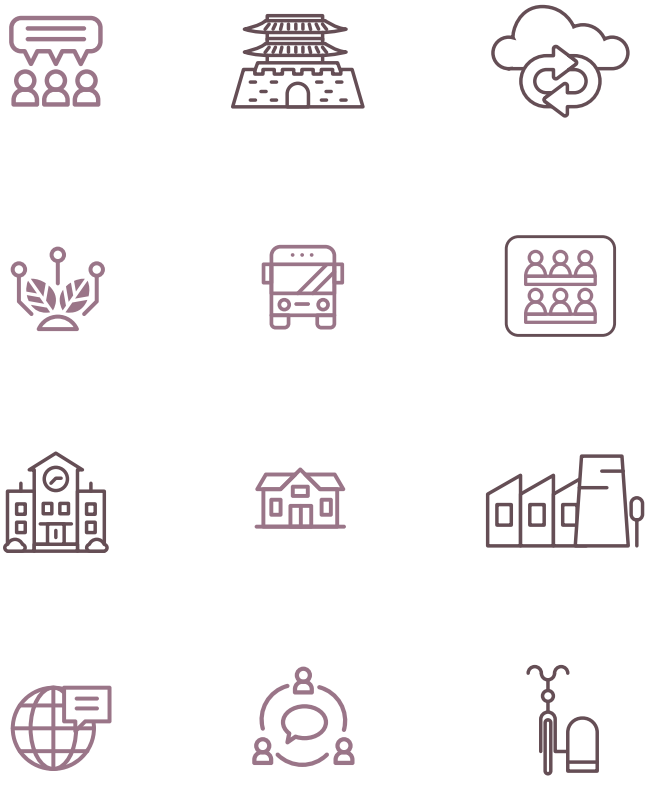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2026-제3호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재정경제부〕 ····· 7

2. 국가 농업AX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 13

3.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및 특별회계 설치 〔보건복지부〕 ····· 17

4.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관계부처합동〕 ····· 21

5.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 · 운영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 33

6.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38

7.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 42

8.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전국 전면 시행 〔소방청〕 ····· 48

9.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 〔교육부〕 ····· 52

목 차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전북본부] ····· 61

2. 2026년 전북연구원 10대 연구 AGENDA [전북연구원] ····· 68

3. 전북 고령장애인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71

4. 2025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 [국회미래연구원] ····· 76

5.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예산 현황과 향후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83

6. 사라지는 집, 사라지는 도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 90

Ⅲ.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 사례

1.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대상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재지정 면밀한 설계 필요 [행정안전위원회] ··· 100

2.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면밀한 사업 평가 필요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05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재정경제부, '26.1.9.)

◇ 정부는 1.9(금) 14:00,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하여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

◇ 수혜자별(청년, 중·고령층, 서민·중산층, 소상공인, 육아) 주요 지원내용

□ 2026년 경제성장 전략



1 청년

○ 교육

AI 등 전략 산업	• **맞춤형 AI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보급** * (대학생)비전공생 대상 AI 활용능력 강화 (청년·군인)구직·재직청년 및 군장병 대상 실제 취업·업무적용 가능한 AI교육 시행 • **군장병 무기체계 관련 AI 개발 등 전문교육 확대** • **방산 계약학과*, 거점대학** 추가지정** * (현행)국방우주, 무인로봇·AI 등 2개 분야(5교) → (추가)국방 반도체·센서분야 포함(+2교 예정) ** (현행)창원대(부울경권, 50명) → (추가)他 권역 1개학교 추가(+50명 예정)
이공계 인재 육성	• **장학금·연구생활장려금 확대** * [장학금] 10,370명(+1,705명) [연구생활장려금] 50개이상(+15개교) • **우수 학부생 발굴·지원**(400명, 年2천만원) • **학·석·박 패스트트랙 신설**(통상 최소 8년 → 5.5년) • **박사후단계 지원 확대**(1,352 → 2,000명 이상) • **글로벌 연구자 도약을 위한 융합연구 확대** * 4대 과기원 이노코어 산학연 공동연구단 확대 등 포닥 지원 강화: 1,042명(+508명)

○ 취업

- AI 현장 실무인력 양성과정 신설(1만명, 6개월)

  * 훈련비 전액지원+훈련장려금 월20만원+특별수당 월 최대 60만원

- 민관협력 인턴·프로젝트형 등 실무중심 일경험 기회 제공(4.3만명)
-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상향(50 → 60만원)
- 취업애로청년 채용기업 등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1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근속 청년에 근속장려금 지급(2년 최대 720만원)
- 거점국립대-지역 유수기업 등 연계 취업보장 계약학과 확대('30년까지 500명 확대)

○ **창업**

- 신산업분야 청년 창업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 AI 중심대학 거점으로 지역전략산업의 AX 전환을 위한 창업 교육 등 원스톱 지원

○ **자산형성**

- 생산적 금융 ISA 청년형[총급여 7,500만원이하] 신설

  *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및 납입금 소득공제

- 청년미래적금[소득 6,000만원이하 또는 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도입

  * 납입금 재정매칭·이자소득 비과세로 최대 2,200만원 자산형성 지원

○ **생계비**

- 주 거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20만원/24개월) 계속사업 전환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 확대('30년까지 1.6만호+α)
- 식 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年 450 → 540만식)
- 여 가 19~20세 대상 청년문화패스 최대 20만원 지급
- 금 융 미소금융 청년상품 시범 도입(4.5%, 최대 500만원, 만기 5년)

2 중·고령층

○ **일자리 확대**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대상 확대(5.3 → 5.6만명)
-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 단계적 확대

  * (현행) 1,000인 → ('27) 500인 → ('29) 300인 이상

- 고령자통합장려금 지급 (월 30만원<비수도권 40만원>, 최대 3년)
- 비수도권 노인일자리 확대

  * 일자리 확대분 비수도권 배분비중 '25 70.4 → '26 90%

○ **교통·돌봄비용 경감**

- 교 통 만 65세 이상 K-패스 환급률 인상(20% → 30%기본형)
- 돌 봄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100 → 30% 내외, '27~)

○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기초연금	• **저소득 부부가구 대상 부부감액**(각각 20%) **단계적 축소**('27.上~)
국민연금	•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축소** * (현행)소득이 평균소득월액(A) 초과시 5구간으로 감액 → (개선)1,2구간(A+200만원) 감액 폐지('26.6) • **월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 **사용자 적립의무 이행률 제고** * (현황)DB형 도입 사업장 44.6%가 최소적립금 미충족 → (개선)지도·감독,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실시 •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의무화 추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26.下)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추진**
주택연금	• **산정방식 개선, 취약 고령층 지원 강화, 실거주 요건 완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26.1분기)

3 서민 · 중산층

○ 포용금융 확대 및 금융범죄 근절

정책서민금융

- **사회적배려대상자·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위한 대출 신설**
  (4.5%, 최대 500만원, 만기 5년)
-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대상 3~4% 소액대출 규모 3배이상 확대**(최대 1,500만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 금리부담 6.3%로 완화**
  (사회적배려대상자는 5%로 추가 인하)
-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12.5%로 인하**
  (사회적배려대상자는 9.9%로 추가 인하)

민간서민금융

- **성실상환자 크레딧 빌드업 체계 구축**
  * ❶불법사금융 대출 완제시 미소금융 지원해 금리 6.3%→4.5%, 한도 100→500만원 우대
  ❷미소금융 완제 또는 성실상환시 징검다리론 이용 지원
- **금융회사 이익으로 중금리 대출공급 확대**
  * 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3.5→6.0조원 및 인뱅 중·저신용자대출 신규취급목표 30→35% 점증 확대

금융범죄근절

- **불법추심 즉시중단 위한 초동조치 강화**
  * 금감원 불법추심 중단요구 및 법적조치 구두경고, 금감원장 명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원스톱 불법사금융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
  * 서금센터 전과정 지원, 금감원 추심중단 요구, 금융회사 불법계좌 차단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지원, 경찰 수사

○ 생계비 경감

- 식　　비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확대(年 5→90만식)
  취약계층 정부양곡 60~90% 할인(1인 10kg/월)
  中企 직장인 점심 20% 지원(5만명, 월 4만원 한도, 5개월)
- 에 너 지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 확대(4.7→12.6만가구) 및 연탄가구 연료전환 (최대 1만가구) 지원
- 교　　통　모두의카드(수도권/일반6.2만원 초과분 100% 환급) 도입('26.1.1~)
- 통　　신　데이터안심옵션 도입, 맞춤형 최적 요금제 주기적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 '26.上)
- 위생용품　만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年 16.8만원)

○ 사회 안전매트 강화

기초생보 강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27) * (현행)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수급 탈락 → (개선)노인·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6) • 부양의무자 기준 고소득·고재산자만 적용토록 단계적 완화('27~'30) • 기준중위소득을 '26년 역대 최대 6.51%[4인가구] 상향
EITC	• 지급요건·기준의 적정성 등 개선방안 마련

자산형성	• 희망저축계좌 금리인상(최대 4.5→5%), 적립유예기간 연장(6 → 12개월)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복지급여 자동지급화 단계적 전환 * 예)부모급여·아동수당 등 보편·현금지급 제도 우선 자동지급 전환 추진 • 촘촘한 복지체계 구현을 위한 복지·돌봄 AI 혁신계획 수립('26.上) *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심리케어 서비스, 24시간 자립생활 지원하는 AI 스마트홈 등 • 현 복지제도의 1인가구 지원효과 등 점검·개선방안 검토

4 소상공인

○ 생활형 R&D·규모화 촉진

생산성 제고	• 레시피 개발, AI로봇 요리, AI 홍보, AI상권분석 등 생활형 R&D 지원 • 신규아이템(레시피 등) 경진대회 등 붐업 • 협동조합 통해 신제품개발, 공정개선 등 공동사업 개발시 정부매칭 지원 (80개 조합, 최대 3억원 이내)

규모화	• 지역 문화·산업·관광 자원과 접목해 글로컬 상권(17곳) 및 로컬 거점상권(50곳) 조성(~'30년) • 로컬 창업가 1만개사 발굴 및 로컬 기업가 年 1천개사 육성 • 로컬 창업타운 통해 교류·협업·정보교류 등 지원 ('26년 2개소)

○ 위기극복·재기지원

경영위기	• 매출·신용정보 등 활용한 위기징후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선제 안내·지원 ('26.6월~)
사업정리	•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 신설(최대600만원, 만기 1년)
재기	•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소상공인 인센티브 신설 * 예)채무잔액 추가감면 또는 이자율 인하 • 중·저신용 소상공인 햇살론 신용카드 발급 ('26.1분기)

5 육아

○ 일·생활 균형 및 양육부담 완화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기준금액 상한 220 → 250만원) • 여성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확대 (전국 159개 새일센터 中 80 → 90개소) • 신산업 직업훈련 과정 확대(93 → 99개) • 근로자 10만명 반값휴가 지원 (정부10·기업10·근로자20만원 휴가비 적립) • 지역사랑 휴가지원 3월 개시 (경비 50% 환급, 20곳 선정)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 월 120→130만원(소규모사업장 140만원) •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 월 20 → 일반 40만원(소규모사업장 60만원) •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및 인증 기업에 공공계약 심사 가점**, 세제 인센티브 신설 검토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 고용·노동 관련 유사 인증제 통합 ** 예)조달청·지자체 입찰 적격심사 가점부여 등
아이돌봄	• 정부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200→250%) • 야간 긴급돌봄 수당 신설(월 5,000원) • 아이돌봄 자격·등록제 도입('26.4~)
양육부담 완화	• 민영주택 청약시 신생아 특별공급유형 별도 신설 • 아동수당(월 10만원)을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2. 국가 농업AX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 부족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시설 중심에서 데이터·AI 기반의 **'농업 AX 플랫폼' 구축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음. 전북자치도는 이에 앞서 『전북특별법』 상의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권한을 활용하여 7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등 선제적 기반을 마련해 왔음.

◇ 향후 이러한 선행 사례를 정부 기조에 맞게 고도화하여 **'전북형 농업 AX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 및 재정 근거 등 **제도적 지원 체계를 신속히 완비**해야 함

1 추진 배경 및 목적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 중심의 스마트팜을 넘어, 데이터와 AI가 의사결정을 돕는 '농업 AX(AI Transformation) 전환'**을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 중임

*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확산(국정과제 68)

○ 이는 노지, 시설, 축산 등 농업 전 분야에 지능형 솔루션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함**으로써, 농업을 **고부가가치 미래형 산업**으로 체질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근거 법률 및 제도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허가 의제, 공유재산 관련 특례 적용*

* 농지법 등 인·허가 의제, 공유재산 관련 특례(사용허가 수의계약, 장기계약, 대부료 감면 등) 제공

○ **민관 합작 운영 시스템(SPC)** 도입을 통해 정부의 공공성과 민간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플랫폼 관리 체계 구축**

○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자금**을 통한 **SPC 융자지원을 검토**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부지 확보 및 행정 절차 단축을 지원

3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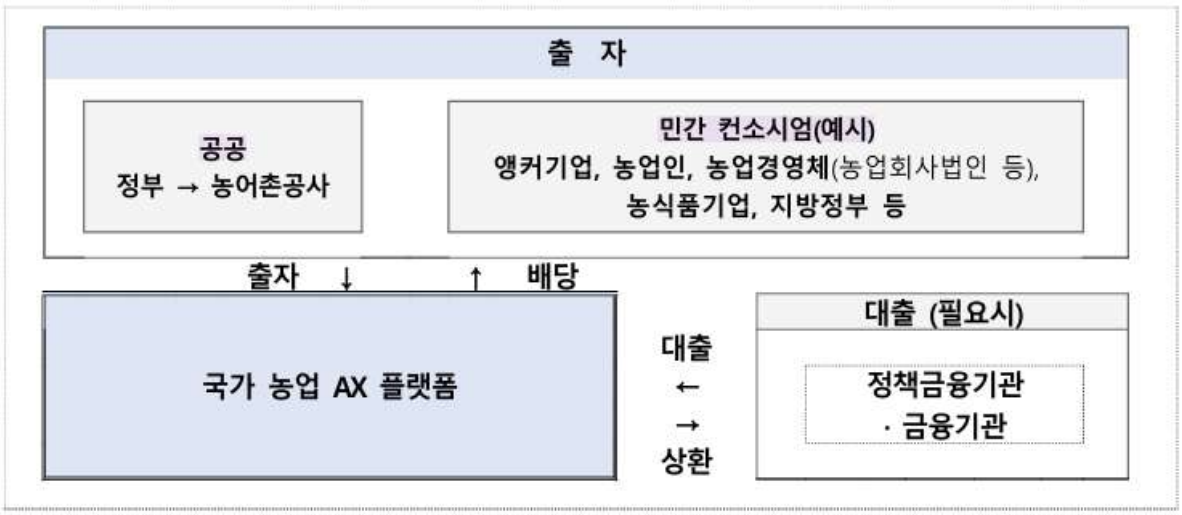
가. 비전 및 사업목표

비전	누구나, 쉽게,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초혁신·모두의 AI 농업	
목표	◇ K-AI 농업 선도모델 구현, 현장 확산을 통한 생산성 혁신 ◇ K-AI 농업 수출산업화 전진기지 구축, 글로벌 신시장 선점	
추진 과제 및 기대 효과	1. 모두의 AI 기반 영농솔루션 플랫폼 구축	2. 초혁신 K-AI스마트팜 고도화
	• 최적 생육 알고리즘 구현, 병해충 조기 진단 가능한 초정밀 AI영농 모델 마련 ⇨ 개별 농가에서 판단이 어려운 복합 문제에 대한 영농 의사결정 제공으로 생산성 혁신 • 피지컬 AI 활용 고강도·반복 농작업 관리, AI스케줄링·작황 예측 등 서비스 구축 ⇨ 일손 부족 해결, 농장 관리 편의성 증대	• AI 기반 지능형·정밀 원격제어가 가능한 고효율·지능형 AI팜 선도모델 구축 ⇨ 생산성 혁신, 농업 규모화 기반 마련 ⇨ K-AI 농업기술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산업화 추진

나. 사업구조 및 추진방식

○ **(사업구조)**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민간의 기술·자본·전문성 활용

< 국가 농업AX플랫폼 사업구조 >



○ **(추진방식) 총 사업비 2,900억 원 이상 규모**(정부 출자금 최대 1,400억원)로, 공공 49%, 민간 51% 범위에서 구성하여 민간 주도 자율적 운영

다. 세부 사업내용

○ **(재배업 분야) 초정밀 AI 모델 및 수출형 스마트팜 구축**

- (AI데이터 솔루션) AI·로봇 파트너와 현장문제 해결형 농업서비스 제공.
- (AI온실) 수출 중심 고효율·저비용 지능형 AI 온실 구축
- (농작업 서비스) 피지컬AI 활용고강도·반복농작업 최적·정밀관리서비스운영

○ **(축산업 분야) 지능형 사양관리 및 환경친화적 스마트축사**

- (AI데이터 솔루션) 일손은 덜고 수익은 늘리는 AI 축산 서비스 제공
- (AI축사) 악취·질병 없는 환경·사양 최적 관리 AI 축사

4 시사점

○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농업AX플랫폼 구축 사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한국 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전략적인 시도**로 보임

-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스마트팜에서 나아가 **AI가 작물의 생육 상태를 판단**하고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농업으로 진입하여 농업인의 **숙련도 격차 해소를 통한 생산의 표준화**를 가능케 함
-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라는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농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청년층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농업을 1차 산업에 가두지 않고, 검증된 AX 모델을 패키지화하여 수출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새로운 수출 먹거리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정책 제언 》 (소관부서 : 스마트농산과)

○ 첫째, 농업 패러다임이 '하드웨어'에서 **'AI 솔루션'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내 영농 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됨

- 기존 스마트농업이 온실 자동화 등 장비 보급에 치중했다면, 이번 정책은 AI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능형 농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함. 이는 숙련도가 낮은 청년농과 노동력이 부족한 고령농에게 실질적인 기술적 토대를 제공함을 의미하므로,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AI 솔루션을 현장에 빠르게 이식**할 수 있는 **실증 기반을 강화**해야 함

○ **둘째, 민·관 협력형 SPC(특수목적법인)라는 새로운 사업 구조에 대응하여 시·군과 연계한 '기업 친화적 농업 환경' 조성이 시급함**

- 정부가 2026년 내 민·관 합작 출자를 통한 SPC 설립 및 부지 확보 완료를 목표로 하는바, 전북자치도는 부지 확보 계획이 구체적인 시·군을 중심으로 **민간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 독려**해야 함. 아울러 스마트농업법상 인허가 의제 및 공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유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도내 4곳/'26. 3. 기준) ①시설원예-남원·진안·김제, ②노지-고창

○ **셋째, 신규 도입된 '농촌 특성화농업지구' 제도를 AX플랫폼의 실질적인 확산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지구 지정 노력이 필요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5.11.4.)으로 특성화농업지구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실제 지정 사례는 없는 상태임. 따라서 전북자치도는 **AX플랫폼 사업 유치와 연계하여 도내 적합지를 특성화농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시·군이 수립* 중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이 본 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독려를 강화**해야 함

* 도내 대상 13개 시·군 중 순창군이 전국 최초로 수립 완료('25.9.)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12개 시·군 역시 올해 내 확정을 목표로 진행 중임

3.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및 특별회계 설치 (보건복지부, '26. 2.)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함(2026.02.12.).
◇ 이 법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생명·건강과 직결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연 1.1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

1 추진 배경 및 목적

○ 그동안 지역 필수의료 지원은 개별 사업별로 파편화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재원 부족으로 인해 인프라 확충과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특히 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민간 의료기관의 진입 기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실정이었음

○ 이에 정부와 국회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안을 마련함

2 근거 법률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2026.02.12. 제정)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및 **특별회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설** 예정임

3 제정안 주요 내용

가. 국가-지자체 공동 책임 체계 구축 및 지자체 사무 (안 제5조~제8조, 제15조 등)

○ (**지자체 참여 보장**) 필수의료 정책에 관한 **국가 위원회에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

○ (**시·도 시행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국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필수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성과를 점검·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조례 위임사무)** 지역필수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 내 진료협력 체계 구축 지원**, 취약지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 **(독자적 대책 및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직접 추진하며, 필요한 경비는 **특별회계 지원** 또는 지자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대응함

나.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및 인력 양성 강화 (안 제9조~제21조)

○ **(진료권 지정 및 협력체계)**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책임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진료·이송·정보교류를 총괄하는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함

○ **(인력 양성 및 지원) 의무복무형 지역의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등을 포함하여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보건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함

○ **(의료 취약지 공백 해소)**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해 인프라 확충과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의료공백**을 줄여나감

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및 집중 투자 (안 제27조, 제28조)

○ **(안정적 재원 확보) 담배 개별소비세**(총액의 55%) 등을 세입으로 하여 연간 **약 1.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함

○ **(중점 지원 분야)** 확보된 재원을 **필수의료 인력 양성, 진료 협력체계 운영, 책임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지자체 사업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함

4 시사점

○ 기존의 사후적·한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특별회계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투입** 경로를 법적으로 보장함

○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주체로서 **지역 맞춤형 의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짐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정책 제언 ›› (소관부서 : 보건의료과)

○ 보건복지부의‘2023년 기준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이며 지역 내 격차도 심각한 수준임. **1,000명당 의사 수**는 **전주(3.2명)와 장수·무주(1.1명 내외)** 간 3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동부권 취약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매우 심각한 실정임 (2023년 기준 의료기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이번 「지역의료필수법」 제정을 계기로 전북만의 특화된 의료 안전망을 재설계해야 함. 도는 법 시행에 앞서 도내 의료 이용 행태와 자원 분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전북형 필수의료 시행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또한 법에서 위임한 ‘지역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조례로 신속히 정비**하여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함

> **※ 관련 조문**
> - **제5조~제8조(필수의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 **제15조~제17조(위원회 및 지원센터)**: 필수의료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수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두도록 함

○ 법안에 명시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내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지역 내 거점병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전북대학교병원 등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진료권별 협력 네트워크를 고도화하여 도민의 골든타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또한, 2027년부터 가동될 국가 **특별회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취약지 의료 인프라 개선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와의 예산 매칭 전략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함

참 고 ‘지역필수의료법’ 주요 내용 (요약)

구 분		조항	주요내용
정의	필수의료	제2조 제1호	·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
	진료권	제2조 제2호	·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
진료 협력 체계	주체 및 구성 기관	제10 ~14조	·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를 진료권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공공보건의료법」상 책임의료기관이 관리·운영을 총괄함 -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 임상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환자 진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 ** 전문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내용		· 필수의료 환자의 진료·이송·전원 및 진료정보 교류, 필수의료 인력 파견·지원, 교육・수련・연구 협력 등
	보상	제9조, 제21조	· 매년 성과평가 실시, 재정지원 시 결과 반영 · 진료협력체계 참여 의료기관 수가 지원
협력 체계	위원회	제15·17조	·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중앙),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지역) 신설
	종합·시행 계획	제5~8조	· ▲5년마다 실태조사 기반하여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복지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도)
	지원센터	제16조	· 사업 시행,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 지원을 위해 복지부 소속으로 필수의료지원센터 설치 가능
지원 시책	필수의료 인력지원	제18~19조	· 필수의료인력 양성·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의무복무형 지역의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를 포함하여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함
	취약지	제20조	· 필수의료 취약지 지정하고 필요한 행·재정 지원 제공할 수 있음
	기타	제22~24조	· 필수의료 제공 기반시설 확충, 연구·교육기관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공,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특별 회계	세입	제27조	· ①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5% ② 수입 담배 관세액 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전입금 제외 분
	세출	제28조	·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 등

4.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관계부처합동, '26.1.21.)

Ⅰ. 추진배경

□ **한미 관세협상, UAE 순방, APEC 등에서 괄목할 경제성과 창출**

○ **한미 관세협상 타결**(對美 자동차·부품 관세 25→15% 인하 등), **AI 핵심 자원**(최신 GPU) **확보*** 등 **통상·공급망 여건 개선**

* 최신 GPU 26만장(정부5만장, 네이버6만장, 삼성전자5만장, SK5만장, 현대차5만장) 확보(APEC)

○ **원전·방산 등 해외진출 기반 확대*** 및 **수주 성과****도 거양

* 원전·방산·첨단산업·K-컬처 4개 분야 전방위 경제협력 강화(UAE 순방)
** 5.6조원 규모 천무 유도 미사일 3차 공급계약 체결(폴란드)

□ 대규모 수주·해외진출 등 **경제성과**는 **대기업 자체 노력** 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 및 **정부 지원**의 **공동 성과**

➡ **경제외교 성과를 대기업 등 특정 기업을 넘어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시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

* VIP, "경제외교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에 이어질 수 있도록 확산 전략 마련"(제16차 수석·보좌관 회의, '25.11.27)

□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 확산** 및 **생태계 고도화**에는 **한계** 노출

* 「상생협력법」 제정('06년), 동반위원회 설치('10년),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23년) 등

❶ 순방 등 **경제외교 성과**가 **중소기업** 등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한계**

❷ **대기업**의 해외 **현지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기업 납품구조 변동***, 中企 **기술탈취**** 등에 따른 **대→중소기업 성과 확산** 경로 **약화**

* 조달경로의 국내→해외(현지 협력사) 대체, 공동 R&D·협업 등 협력 기회 축소 등
** 年 약 300건, 평균 손실액 18억원 추정(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24년)

❸ 기존 **상생협력 생태계**가 **제조업 중심***으로 **구축**되어, **플랫폼·금융·방산·기후** 등 **경제 전반**으로의 **확산 미흡**

* 업종별 상생협력기금 출연 비중(%) : (제조) 51.0 (건설) 9.1 (유통) 8.9 (IT) 3.3 등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중소 상생 성장전략" 마련·추진**

Ⅱ. 추진방향

비전 대·중소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 구현

3대 방향

❶ 관세협상·순방 등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직접 공유·확산
❷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❸ 플랫폼·금융·방산 등 상생 생태계 확장

3대 방향	주요 추진과제
직접적 성과 공유·확산	1 대·중소기업 대미 투자프로젝트 지원 2배 확대 2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확산 3 향후 5년간 상생협력기금 1.5조원 이상 조성 4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1 정부 확보 GPU 중소·스타트업 약 30% 배분 2 대기업 지식·기술·노하우를 중소기업으로 확산 3 성과공유제·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4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 5 기술탈취 기업 행정처벌 및 제재 강화
상생 생태계 확장	1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평가 편입 추진 2 (금융) 상생금융지수 도입 3 (방산)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 신설 4 (원전)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5 (기후) 공동 탄소감축 투자시 녹색금융 지원 확대 6 (지역·안전) 지역경제·산업안전 상생협력 강화

【 주요 기대효과 】

◇ 상생 생태계 : 제조 중심 → 플랫폼, 방산, 금융 등 확장
◇ 상생협력기금 : '16~'25년 年 2,663억원 → '16~'30년 年 3,000억원
◇ 상생금융 : '25년 1조원 → '26년 1.7조원+α(지속 발굴·확산)
◇ 상생결제 : '25년 189조원 → '30년 230조원
◇ 中企 기술보호 역량 : '24년 49점 → '30년 65점(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Ⅲ. 세부 추진과제

1 직접적 성과 공유·확산

◇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개척·진출 확대 및 성장자본 공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직접 공유·확산**

1 [동반진출] 수주·수출 성과를 中企 해외개척·進출 기회로 활용

○ **(해외 동반진출 ❶ : 재정지원)** 대·중소기업이 對美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동반진출시 정부지원 2배 확대[중기부]

* (당초)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진출시, 3년간 최대 10억원 → (확대) 對美 진출시 3년간 최대 20억원(그 외 15억원) + 보증 200억원 연계

○ **(해외 동반진출 ❷ : 금융지원)** 수출지원기관(수은, 산은, 무보 등) 수출·수주금융 지원시,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 우대*(한도·금리 등)[재경부+금융위+산업부]

* 예) 수주·수출 성과의 환류·확산 방안(예: 국내 협력 중소업체를 통한 현지 설비·자재 공급 등)이 구체화된 대·중소 컨소시엄에 대해 정책 금융지원 한도·금리 우대

○ **(글로벌 공급망)** 대기업 현지진출 확대 등에 대응해 협력업체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지원하고, 공급망 장벽 대응 역량 강화[산업부+방사청 등]

▪ 방산 등 분야 협력업체 글로벌 인증(수출대상국 요구 규격·인증 등) 획득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방사청]

* 예) GVC 30 프로젝트 사업 :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분석을 통해 국내 방산 분야 중소기업 실증시험, 해외 마케팅 등 공급망 지원('26년 301억원)

▪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을 선정(200개, ~'30년)해 현지진출·M&A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탑티어 도약 지원[산업부]

* IP 해외출원 비용 지원, 컨설팅, 현지 법률 검토 등 현지진출 패키지 지원, 미래차 부품기업 M&A 자금지원(인수금액의 최대 60%, 200억원 한도) 등

▪ 글로벌 공급망 장벽(예: EU 공급망 실사지침* 등) 대응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Data Space) **구축**** 추진(~'28년) 산업부

* EU 진출기업에 공급망 전반(협력사 포함)에 걸쳐 인권·환경 실사 의무 부과
→ EU 진출기업 국내 협력사의 실사 대응 부담 발생

**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Data Space에 인권·환경 실사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면 원청사(대기업) 플랫폼에 데이터가 자동 연동·제공 → 협력업체 실사 부담 경감

2 [상생금융] 대기업 기여 등을 활용해 생태계에 성장자본 공급

○ **(상생금융 프로그램)**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신·기보, 무보 등)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 및 **확산**(현기차-금융권-협력사 사례: 당초 **1조원** → 확대 **1.3조원** 규모) 산업부+중기부+금융위

현기차-금융권 상생금융 프로그램

저금리 대출 (2,000억원)	▸ (신보) 국민銀 50억원 출연 × 20배수 = 1,000억원 ▸ (기보) 현대차 50억원 출연 × 20배수 = 1,000억원
보증서 발급 (8,700억원)	▸ (신보) 현대차·금융권 160원 출연 × 15배수 = 2,400억원 ▸ (무보) 하나銀 215억원 출연 × 20배수 = 4,300억원 ▸ (무보) 현대차 100억원 출연 × 20배수 = 2,000억원
회사채 발행 (2,250억원)	▸ (신보) 현대차 70억원 출연 × 32배수 = 2,250억원

▪ **포스코인터내셔널 출연**(10억원) 및 **신보 보증**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 신설**('26.1월~) 금융위

▪ **포스코**(50억원)·**기업은행**(150억원) **출연** 및 **무보 보증**을 통해 **4,000억원** 규모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 공급**('26.1월~) 금융위+산업부

▪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신설** 재경부

* 중견기업 지원 목적 5%, 중소기업 지원 목적 10%, '28.12.31까지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신·기보 출연금에 대해서는 10% 법인세 旣 감면 중)

○ **(상생협력기금)** 향후 **5년간**('26~'30년) **상생협력기금 1.5조원 이상조성**(연평균 조성규모 : '16~'25년 2,663억원 → '26~'30년 3,000억원 이상) 중기부

▪ **상생협력기금 출연 유도**를 위해,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 방산 체계기업**(대기업) 등에 **인센티브 등**** **부여** 중기부+방사청

* 상생협력기금 전체 집행액 중 정부매칭 사업(상생협력기금→정책사업 출연시,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 비중 확대 : ('24년) 14% → ('30년) 20%

** 예) 상생금융지수 평가시 우대, 방산 체계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증가율을 상생수준평가 세부 평가지표로 활용 등 검토

▪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지원 용도**를 **기존 협력사 위주**에서 **非협력사 지원 등 생태계 전반까지 확대*** 중기부

* (現) 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관)(민간, 공공)이 지원용도·대상 지정(협력사 위주로 지원) →
(改) 상생협력기금 내 공동협력사업(非협력사 스마트제조AX, 소상공인 등 지원)을 신설하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공모를 통해 선정

○ **(전략수출금융기금)** **대규모 수주**를 충분히 지원하고,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재경부

▪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 등 생태계**로 **환류**(근거법 제정, '26.上)

▸ **(재원) 정부 출연·보증 + 정책금융기관 출연 + 수혜기업 기여금 + 정부납부 기술료**
▸ **(운용) 대규모, 장기·저신용 수출금융**(대출·보증) **+ 수출기업** 등에 대한 **투자**

2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 공동 기술개발·협업, 성과공유제·납품대금연동제 확대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1 [공동 기술개발·협업] 지속 가능한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

○ **(GPU)** **정부 확보 GPU**(5.2만장) 중 **'25년 추경 활용분**(약 1만장)을 **중소·스타트업**에 **약 30% 배분** 추진(사용료: 시장가격의 약 5~10%) 과기부

▪ **정부 GPU 공급**(GPU 확보사업,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등) 과기부과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AI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간 **연계** 과기부+중기부 **추진**

* 정부 확보 GPU 중소·스타트업에 배분, 국가 AI 컴퓨팅센터 중소·스타트업 활용 촉진 등

○ **(지식 확산) 정부·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지식·기술·노하우**(장비 배치, 경영 기법 등)를 **중소기업**으로 **확산***중기부

* (現) 상생협력기금으로 상생형 스마트공장, 안전보건, 상생 ESG 등 민관 공동 전략 등으로 개별 사업에 특정된 지식 공유에 국한 → (改) 상생협력기금에 지식확산형을 신설하여 장비 배치, 경영 기법 등 일반 지식의 확산 촉진

○ **(스마트공장) 대기업·공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확대**('25년 340억원→'26년 400억원)중기부

*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시,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매칭 지원(기업당 최대 1.2억원 한도)

▪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25년 8개사 → '26년 20개사) 및 **국비분담 지원 확대***중기부

*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비 분담률(%, 정부:대기업:중소기업) : (일반형) **30**:30:40 (AI분야) **50**:20:30

▪ **대·중견·중소 협력사가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제조 AI를 개발·현장 적용**하는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 구축(100개, ~'30년)산업부

○ **(개방형 혁신) 민관협력형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지원**을 **확대**('25년200억원→'26년242억원)하고, **단계별 성과기반 지원체계*** **구축**중기부

* 지원내용 : (매칭)협업 파트너 매칭 → (기술검증)과제해결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기업당 최대 1.4억원 지원) → (시장검증, **신설**)후속 시장검증 지원(기업당 최대2억원 지원)

○ **(인력양성) 대기업 AI 인프라·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26년 2,000명 양성 목표)노동부

* '26년 예산 100억원(20개소 공동훈련센터 지정 × 개소당 100명 양성 계획)

▪ **청년 구직자 취업역량 제고** 및 **협력 중소기업**에의 **취업연계**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중기부

* 대·중견기업이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교육 실시, 협력 중소기업 취업 연계('26년 30억원)
↳('25) LG CNS, 포스코 등 13개 → ('26)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대기업 등 확대 추진

○ **(공동 R&D) 중견기업**과 **중소기업**(2개 이상)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에 **R&D**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 확대***산업부

* '25년 156억원(5개 과제) → '26년 252억원(15개 과제)

▪ **중견·중소 컨소시엄** 내 환류 경로 강화를 위해 **현금배분, 물량확대** 등 **성과공유계약 의무화**(이행여부 점검 및 평가 등)산업부

○ **(데이터) 대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바우처*** 지원('26년 94억원)[과기부]

* 데이터 공급기업(대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구매·가공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 [상생협력 기반 강화] 대→중소기업 성과 환류 생태계 기반 강화

○ **(성과공유제) 성과공유제** 적용대상을 수·위탁 거래에서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중기부]

* (現) 수위탁기업 → (改) 플랫폼, 유통, 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상생협력법」 개정, '26.上)

▪ 성과공유 유형* 중 **현금·현금성 공유**(지식재산권 공유 등)에 대해 **동반성장평가 우대·개선****[중기부]

* ①현금 공유, ②현금성 공유(지식재산권 공유 등), ③물량 확대

** (現) [현금·현금성]공유 금액만 인정 + [물량확대]발주계약 금액 전체 인정 →
(改) [현금·현금성]공유 금액 2배 인정 + [물량확대]신제품·신기술 개발에 한해 위탁기업이 발주한 금액만 인정, 그 外(단가절감, 성능개선 등)는 현금 공유액만 인정

○ **(상생결제) 상생결제 지급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공공 하도급 계약**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단계적 **의무화**[공정위+국토부+중기부 등]

▪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0.15~0.5%) **일몰 연장**('25년→'28년)[재경부]

* 상생결제를 통해 결제한 금액의 0.15~0.5%를 법인세에서 공제(최대 10%)
※ 세액공제율(%) :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0.3 (31~60일) 0.15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상생결제 지급**에 대한 **정량평가**(0.3점) **반영**[행안부]

▪ **공공 하도급**(건설·제조·용역) 및 **민간 건설하도급** 전체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단계적 의무화***[공정위+국토부 등]

* (現) 공공 건설 하도급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건설산업기본법」 등)
→ (改) 건설 포함 제조·용역 분야 공공 하도급 및 민간 건설하도급 전체로 단계적 의무화

○ **(동반성장평가)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 우수기업(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동반성장평가 내실화 추진[중기부+동반위]

▪ **금융·플랫폼·방산** 등 특화분야 지수 **산정·발표***[동반위]

* (現) 동반위 평가(50%)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50%)를 합산해 동반성장지수 산정 발표
→ (改) 금융위(금융), 방사청(방산) 등 협업을 통해 특화분야 별도 개발·산정

▪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동반성장지수 우수 대·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 우대방안*** 마련 중기부+동반위

* (現) 수·위탁 실태조사 및 하도급 직권조사 면제,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 **동반성장평가 대상 공공기관**을 현행 134개 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25년 기준 331개 기관)으로 **단계적 확대** *중기부

* (現) 공기업 전체 31개, 준정부기관 전체 57개, 기타공공기관 46개 대상 실시
→ (改) 기타공공기관 평가대상 선정기준 마련('26년) 후 단계적 확대(~'30년)

▪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 **동반성장평가 반영 지표 배점 확대** *재경부

* 공기업(SOC·에너지) 1.5→2점 / 공기업(산업진흥·서비스) 2→2.5점 / 준정부기관 1→1.5점

○ **(납품대금연동제)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전기·연료 등) **경비까지 확대** *중기부+공정위

* 「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25.11.13, '26.12월 시행), 「하도급법」 법사위 통과('25.12.3)

▪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 추진 중기부

○ **(피해구제기금)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구제기금*** **설치 방안 마련**('26.上) 공정위+중기부

* (재원) 불공정거래 관련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年 5,000억원 수준) 일부(20% 이내)
(용도) 소송지원, 분쟁조정지원, 자금지원, 피해예방 및 권익증진 등

○ **(中企 협상력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고, **협상에 필요한 행위**(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담합 예외 인정** 중기부+공정위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과 단체적 계약 체결 시 거래조건 등에 대해 협의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 **(사회연대경제) 대기업**과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간 **협력사업 발굴**, 사회연대경제조직 **물품 우선구매** 등 상생협력 지원 행안부

▪ **사회연대경제 민간기금***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독려**

* 법인·기업 등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투·융자 지원, 사회가치 창출 목적의 자금공급 등을 수행하는 민간기금

3 [기술탈취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및 행정처벌·제재 강화

○ **(대응체계)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 등 **대응체계 강화**중기부+공정위+지재처 등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조사 → 조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 중소기업 관련 기술탈취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기술탈취 합동 대응단*** 구성·운영('26.1월)중기부+공정위+지재처 등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추진

▪ 「**IP 법률지원단**」을 **신설***('26.下)해 **초기 분쟁대응**(경고장 발송 등)부터 **심판·소송 대리, 분쟁조정** 등 통합 지원지재처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법」제정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 **(손해배상 현실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의 기준이 되는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중기부

*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도 손해 배상액 산정시 반영, 손해액 산정 가이드 마련·배포

○ **(수사·조사 강화)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現 25명), **수사·조사기관 대상 기술자문** 제공지재처

▪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 도입·운영 및 **익명제보** 활성화공정위

* 기술탈취 가능성이 높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 → 불법행위 정보 수집

○ **(제재 강화)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 및 제재 강화**중기부+공정위

▪ **행정제재**를 시정명령, 벌점 등으로 **확대**(現 시정권고만 규정)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최대 50억원) 도입**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개정('26.下)

▪ 기술탈취 빈발 업종(기계, 차부품 등) **직권조사 강화**(연 2→3회)공정위

3 상생 생태계 확장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를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플랫폼, 금융, 방산, 원전, 기후, 지역·산업안전 등으로 확장**

❶ **(플랫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최혜대우요구 등)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검토[공정위]

-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추진[중기부+동반위]

* 평가대상 : (現) 제조·건설·유통업 등 250개사 → (改) 온라인플랫폼 기업 추가

❷ **(금융)** 금융회사와 中企간 상생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26년) 및 **포용·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금융위+중기부+동반위]

* (평가대상) 중소기업 대출 상위 은행(기업·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일정) 평가지표 마련(~'26.上) → 시범 평가('26.下) → 본 평가('27)

** 민간금융권 생산적금융 525.5조원(국민성장펀드 투자 52조원), 포용금융 77.5조원

❸ **(방산) 체계기업**(대기업)과 **방산 스타트업간 협업** 촉진[방사청+중기부]

-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를 **신설**('26년, 비공표)*하고, **상생협력 수준별 인센티브****를 **마련**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방사청+동반위]

* 한화오션,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15개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평가 우수기업 대상 방산원가, 절충교역, 이차보전 분야 인센티브 검토

- **공모형 획득제도*** 도입[방사청], 군·방산업체가 제안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및 **실증시험** 지원[중기부+방사청]

* (現) 군이 성능·전력화 시기 등 결정 → (改) 스타트업 등이 성능·획득계획 제안

❹ **(원전) 원전 중소·중견기업 공급망 강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 **지원**('26년 45.3억원)[산업부]

▪ 美, 튀르키예 등 **원전 수주 유망국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 공급사와 B2B 미팅** 지원[산업부]

❺ (기후) 대기업-협력업체 공동 탄소감축 투자시 녹색금융 지원 확대[*기후부]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환경산업기술원) 이차보전 지원 대출공급 한도액
: (現) 최대 2조원 → (改) 최대 30% 가산(최대 2.6조원)

▪ **중소·스타트업** 등의 **기술·아이디어**를 **대기업**의 **탄소감축 문제**에 **활용**(개방형 혁신, '26년 10개사)[기후부]

▪ **대·중소기업 녹색수출 원팀 체계***를 가동해 **대기업 해외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이 **동반진출**하는 패키지형 수주모델 구축[기후부]

*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구성·출범('23.1월), 74개 기관 참여 중

❻ (지역·산업안전)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안전** 관련 **상생협력** 강화[노동부+동반위]

▪ **지방정부**의 **중소기업·특화산업 지원과제**에 대해 **동반위**가 **대기업** 수요 조사 및 **매칭 지원*** + 참여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우대****[동반위]

* 시도별 특화산업·전통시장 지원 등 과제 발굴(지방정부) → 대기업 수요 발굴 통해 대기업-지방정부 매칭(동반위) → 대기업-지역 중소기업 협력(동반성장지수 우대)

** 지역사회 동반성장 배점 확대(현행 1점) 등 우대방안 검토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건설업 포함 全업종**으로 **확대****[노동부]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 신규 반영** 추진[동반위]

* 모기업(100인 이상)이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안전보건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활동시 정부가 50~70% 매칭 지원

** (現) 건설업 제외 모든 업종 지원 중 → (改) '26년부터 5개 종합건설사 및 50여개 협력업체 대상으로 시범 운용 후 확대 검토

◈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 신설해 추진과제 점검**

* 중기부-동반위 주관, 10대 그룹 및 협력사, 경제단체·학계, 관계부처 등 참여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정책 제언 ≫ (소관부서 : 기업애로해소과/이차전지탄소산업과)

○ 전북자치도는 삼성전자 및 14개 시·군과 협력하여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통하여 2026년까지 도내 제조 현장에 전북형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정부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에서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 구축** 및 상생형 **스마트공장의 국비 분담률을 50%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바, 전북자치도에서도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정부의 **AI 스마트 공장 확대 기조**와 적극 연계하여, **도내 중소기업 공장의 고도화**를 앞당기고, 많은 기업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전북자치도에서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를 통하여 도내 기업을 돋움, 도약, 선도, 혁신, 강소기업 등 선장 단계별로 분류하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정부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에서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에 공유하기 위해 **최대 20억원의 동반 진출 지원금, 1.7조 규모의 상생금융, 상생협력기금 확대**를 발표하였는바, 전북자치도에서는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내의 우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협력사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매칭 활동**이 필요함

○ 또한 정부가 신설하는 거대 융자 및 수출 기금을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컨설팅 창구를 강화**하여 정책적 효과를 높여나가야 함

○ 전북자치도는 특장차, 탄소, 이차전지 등 관련 유망 중소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바, 정부의 방산 체계기업이나 주요 대기업의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기술 개발(R&D)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 ·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5.12.)

◇ 수요응답형교통은 차량 운영 방식의 효율화를 통해 지자체의 교통서비스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이용자 만족도도 높아 여러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지자체가 인구감소 등의 여건 변화로 수요응답형 교통의 도입을 검토하거나,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교통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정책 역량을 지원

□ 수요응답형교통 개요

○ (개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은 운행 계통·시간·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도입배경) 과거에 버스를 다수가 함께 이용하기 위해서는 승객이 노선에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해야 했으나 수요가 저조한 인구감소지역 등에서는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

○ (운영방식 및 특징) 호출 기반의 최적 경로로 운행하므로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고 밀집된 지역보다 수요가 적고 분산된 지역에서 효율적*

* 수요가 많고 밀집된 지역은 DRT보다 대형버스를 활용한 노선운행 방식이 효율적

□ 수요응답형교통 제도 현황

○ (업종) DRT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버스),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전세버스 등)과 구분

○ (면허) DRT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사무위임 시 시·군·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여객차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운임) DRT[한정면허] 운임은 시내·시외버스 등과 달리 정부·지자체가

상한을 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운임을 신고하면 시·도지사는 7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여객차법 제8조)

○ (운행지역) DRT는 노선버스, 택시 등 다른 운수사업자와의 업역 중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운행 가능 지역을 한정(여객차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 (차량) DRT용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차(10인 이하)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차(11인승 이상) 사용 가능(여객차법 시행규칙 별표1)

○ (기타) DRT는 인구감소 등으로 교통복지 수준이 저하된 지역에서 노선버스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하고자 도입되었으나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지는 않음(대중교통법 제2조)

□ 수요응답형교통 도입·운영 기본 방향

○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증진

– DRT 도입 의의는 교통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동권 보장과 실수요 중심의 운행을 통한 효율적 교통서비스 운영을 도모하는 것임

○ 적정 서비스 수준 관리 및 운영 효율화

– 차량이 많을수록 대기·이동시간은 감소하나 재정부담도 커지는 바 서비스목표(예: 대기 15분 內)와 재정상황을 고려해 도입 규모 검토

○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융합

– 기존 택시·버스를 DRT로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융합하여 교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DRT 도입

□ 수요응답교통 도입·운영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 DRT 도입·운영은 일반적으로 ①사전검토, ②계획수립, ③운영준비, ④운영·관리, ⑤성과분석·환류 5단계로 구성

○ 사전검토 : 법령검토, 실태분석(대중교통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률, 인구 특성), 사례분석

○ 계획수립 : 목표 및 운영규모 설정, 재정절감 측면, 주민편의 측면, 운영방식, 차량, 운임, 승하차지 설정, 차량 대기 장소, 예산, 상생협력, 수용성, 협의체 운영

○ 운영준비 : 공모 및 입찰, 사업자 선정 면허발급, 협약체결, 운행준비(도색, 콜센터, 승하차장, 차량 대기장소, 시스템 연계, 운수종사자 교육, 시범운행, 주민홍보 설명)

○ 운영·관리 : 모니터링 및 피드백, 기초현황 지표, DRT 이용현황 지표, DRT 차량운행 지표, DRT 운영비용 지표, 편의개선 지표, 민원접수 및 대응, 서비스 장애 대응, 재정지원, 안전관리

○ 성과분석·환류 : 사업구조, 지표달성, 요금·재정구조, 만족도, 사업자 평가, 제도개선

□ 수요응답교통 주요 운영 사례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콜센터 예약형 DRT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을 위한 “TS-DRT” 시스템을 구축·운영(`18~)

○ `25.12월 기준 72개 시·군이 TS와 협약하여 콜센터형 DRT, 바우처 택시(“100원 택시”) 등을 운영하며, 시스템 사용료는 45만원/월

구분		TS-DRT 시스템 사용 협약 지자체
대구광역시	1개	달성군
대전광역시	1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1개	울주군
경기도	7개	남양주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포천시, 화성시, 가평군
경상남도	15개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창원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북도	15개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전라남도	8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구례군, 무안군, 진도군, 해남군,
전라북도	10개	김제시, 남원시, 전주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충청남도	9개	계룡시, 공주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충청북도	5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증평군, 음성군
합계	**72개**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정책 제언 ≫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노선버스 유지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북자치도**는 벽지 노선을 대체할 지역 **맞춤형 DRT 운영 모델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가이드라인에서 지적하고 하고 있는 바와 같이 DRT 도입 시 **도내 기존 택시 및 버스 사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기존 **사업자의 참여**나 **상생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나아가 DRT 도입시 스마트폰 앱 사용이 어려운 **농촌의 고령자들**을 위해 **콜센터 호출이나 마을회관 전용 호출기** 등 **고령자 친화적인 접근 방식이 선행**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전북자치도의 많은 지자체들이 `25.12월 기준 72개 시·군이 TS와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완주, 군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음

○ 향후 전북자치도에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산간 및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수요에 맞춘 최적경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 진료나 장보기 등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며, **차량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여 전북 지자체의 전반적인 **대중교통 운영비**와 **보조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6. 4.)

◇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상반기 인구감소지역 16개 지자체 선정, 하반기 4개 지자체 추가 선정 예정**
◇ **사전 준비 거쳐 4월부터 시행, 개인당 최대 10만 원 환급**
◇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으로의 재방문 유도**

1 추진 배경 및 목적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 관광을 매개로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정부 차원의 전국 단위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최초 시행**

2 주요내용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예산 65억 원)을 처음 편성해 추진하고, 이를 위해 상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하였음

* 강원(평창군, 영월군, 횡성군), 충북(제천시), **전북(고창군),** 전남(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경남(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하며,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정부와 관광공사는 ‘26년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들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사업절차는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신청자는 18세 이상)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며,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국민이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받는 형식으로 진행됨

○ 환급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26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여행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지역마다 사전 신청 시기와 증빙 방법, 환급된 상품권의 사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이 다른 만큼 4월 본격 시행 전 신청 가능한 지역에서 경비 지원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함

○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후, 하반기에도 4개 지역을 추가로 공모해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3 시사점

○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정책모델로서,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발굴·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모델로 발전시키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전남 강진군 등 일부 지자체의 선도적 운영사례와 경남 하동군의 확산 모델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한 사업

○ 단순한 여행경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가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체류형 관광과 지역 특화 콘텐츠를 연계하여 관광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민에게는 합리적이고 만족도 높은 국내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정책 제언 >> **(소관부서 : 관광산업과)**

○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 1개 지역(고창군)만 선정되어, 전국 평균 선정 비율 대비 다소 낮은 수준으로 보이며, 향후 하반기 추가 공모 및 확대 추진 시 도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선정된 고창군의 운영 성과(관광객 증가율, 체류일수, 지역소비 증대 효과 등)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내 타 시·군으로 확산 가능한 전북형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환급형 지역상품권이 실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숙박·외식·체험·특산물 온라인 판매 등과 연계한 소비 촉진 방안을 병행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참 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현황(84개) 및 시범사업 선정 지역

광역 시·도	개수	전체 시·군	시범사업 (개수)
	84		16
인천광역시	2	강화군, 옹진군	0
경기도	2	가평군, 연천군	0
강원특별자치도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3
충청북도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1
충청남도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0
전북특별자치도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
전라남도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6
경상북도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0
경상남도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합천군**	5
대구광역시	1	군위군	0

7.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26. 2. 23.)

◇ 2월 23일부터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 시행,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실현
◇ 스포츠활동으로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 적립, 스포츠·건강 분야에서 사용

1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정과제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실현을 위해, 스포츠 참여에 따른 비용 부담은 완화하고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2 주요내용

○ 국민의 생활 속 스포츠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인 ‘튼튼머니’ 사업을 시행하며, 만 4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스포츠시설 이용이나 체력 측정 등 스포츠활동 참여 시 30분당 50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음

○ 전국 약 4천여 개 스포츠시설 및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에서 활동 인증을 통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며, 적립된 포인트는 제로페이 스포츠상품권, 삼성생명 ‘슬리머니’, 문화상품권 등으로 전환하여 스포츠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병원·약국 이용, 보험료 납부 등 스포츠·건강 분야 전반에 활용 가능함

○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3월 말 ‘튼튼머니’ 전용 모바일 앱을 출시하여 운동 인증, 활동 기록 관리, 주변 적립 시설 검색, 포인트 전환, 참여형 챌린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며, ‘튼튼머니’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스포츠 복지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며, 참여 인원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3 시사점

○ **보상 기반 생활체육 참여모델 정착 가능성**

- 운동 참여에 대한 직접적 인센티브 제공은 생활체육을 '의무적 건강관리'가 아닌 **'보상이 수반되는 참여 활동'**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됨. 이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행동경제학적 접근 모델로 의미가 있음

○ **예방 중심 건강정책으로의 전환**

- 운동 실천 확대는 만성질환 예방과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료 중심 보건정책에서 **예방 중심 건강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디지털 기반 참여관리 체계 구축**

- 전용 앱을 통한 운동 인증·기록관리·포인트 적립 시스템은 정책 참여의 지속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구조적 장치로, 향후 공공 건강관리 플랫폼과의 연계 가능성도 존재함

○ **스포츠 복지의 보편적 확장성**

- 만 4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설계는 생활체육을 복지의 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으며, 참여 인원 확대에 따라 정책 체감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지역경제 연계 가능성**

- 포인트 사용처가 스포츠시설·의료기관·용품 구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지역화폐 및 지역 상권과 연계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정책 제언 ›› (소관부서 : 체육정책과)

○ ‘튼튼머니’ 적립 가능 시설이 참여율을 좌우하는 만큼, 도내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의 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인구감소지역 체육시설의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전용 앱 출시와 연계하여 도 차원의 통합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학교·직장·공공기관 대상 참여 확산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도민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포인트 전환처가 지역화폐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도내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상권과의 연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운동 참여 인센티브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함

○ 단순 참여 인원 확대를 넘어, 도민 건강지표 변화, 만성질환 관리 효과, 체육시설 이용률 증가 등과 연계한 정책 성과 분석 체계를 마련하여 중장기적 정책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붙 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국정과제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실현을 위해, 스포츠 참여에 따른 비용 부담은 완화하고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사업기간/대상)** '23년(시범운영)~계속 / 만 4세 이상 전 국민

○ **(사업내용)** 체력진단, 스포츠활동(스포츠 적립시설, 야외스포츠활동 등) 등 체력증진 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 포인트를 제공, 적립된 포인트를 스포츠(시설등록, 용품구입) 및 건강(병원,약국, 보험 등) 분야에 사용

- **(적립한도)**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5만 원) * 1포인트=1원
- **(포인트 적립 체육시설)** '25년 4,065개소*

  * 국민체력인증센터(75개소), 지정스포츠클럽 및 민간체육시설(3,990개소) 등

- **(적립절차)** 국민체력100 서비스(회원가입, 체력측정, 증진교실 등)에 참여하거나, 포인트 적립 가능 체육시설에서 QR코드로 출석을 확인하면 적립됨

QR코드 발급	→	스포츠활동 인증	→	본인확인	→	적립완료
스포츠 적립시설별 전용 QR코드 발급		참여자 스마트폰으로 QR코드 2회 촬영 (운동시작/후 30분)		국민체력100 / 튼튼머니 앱 회원 로그인		스포츠활동 인증 횟수 자동적용 (주5회/최대100회)

- **(사용절차)** 1천원 단위 스포츠상품권으로 전환 후 사용(제로페이 등 연계)

  * '제로페이' 앱(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 이용이 제한된 14세 미만은 문화상품권으로 전환

- **(포인트 사용시설)** 스포츠용품점·약국 등 스포츠·건강 분야 8만 6천개 가맹점

2 추진 실적

연도	2023	2024	2025	2026
지원금	495백만원	500백만원	4,000백만원	4,000백만원
지원인원	9,900명	10,000명	80,000명	80,000명
실지원인원	16,442명	25,354명	124,129명	148,955명
참여인원	–	232,395명	329,609명	35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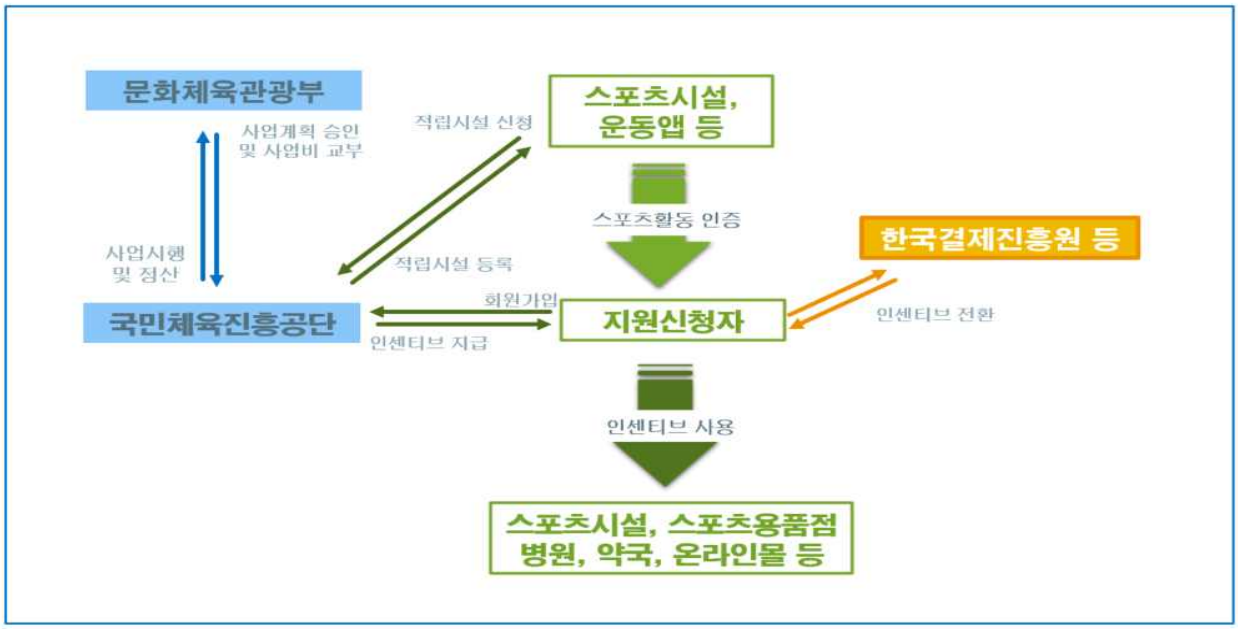
* 지원금: 적립한 포인트 중 전환 가능한 금액(지원금 예산)
  지원인원: 1인당 최대 지원금액 5만 원 기준 지원 가능 인원
  실지원인원: 적립한 포인트를 실제로 스포츠상품권 등으로 전환하여 실제로 지원받은 인원
  참여인원: 포인트 적립에 참여한 인원(튼튼머니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 ID기준, 중복 제거)

참고 1 | **2026년 튼튼머니 사업 홍보물**



참고 2 |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안내 게시물**

□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 추진체계



□ 참여 안내 게시물(체육시설 데스크 등에 비치)



QR 코드



참여방법 안내

8.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전국 전면 시행 (소방청)

◇ 소방청은 그간 시·도별 관할 구역 위주로 운영되던 소방헬기 출동 체계를 **국가 차원의 통합 관제 체계**로 전환하여, 2026년 3월부터 전국에 전면 시행함
◇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를 즉시 투입**하는 '최인접·최적정 헬기 투입' 원칙을 통해 구조 골든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

1 추진 배경 및 목적

○ 그간 소방헬기 출동은 각 지자체 항공대에서 자체적으로 운항관리를 수행해 왔으나, 이로인해 관할 구역 외의 **타 시·도 헬기가 사고 지점에 더 가까이 있음에도 관할 헬기가 출동**하면서 발생하는 대응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특정 시·도의 헬기가 정비 중일 때 발생하는 **출동 공백을 인접 시·도 자원과의 상호 보완을 통해 해소**하고, 국가 통합 관제를 통해 비행 중 항공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사고 위험을 최소화함

○ 산악 및 도서 지역 등 접근성이 취약한 현장에서의 **골든타임 확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적 차원의 항공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

2 근거 법률 및 제도

○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의 **전국 소방헬기 운항관리 컨트롤타워(통제탑) 역할 강화 지침** 및 소방항공과 전담 인력 운영 기반에 근거함

- **단계별 확산 과정**: 2023년 4월 충남·전북 등 4개 시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6년 1월 경기·강원 편입을 거쳐 **2026년 3월 서울·인천을 포함한 전국 단일망 구축 완성함**

3 주요 내용

가. 지휘통제 체계의 일원화 및 전국 통합 관리

○ 소방청 운항관제실이 전국 소방헬기의 배치 현황, 기종별 임무 특성, 사고 지점과의 거리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함

○ 기존 중앙과 시·도로 분산되었던 지휘통제 권한을 소방청으로 일원화하여 전국적인 통합 관리 및 조정·통제 시스템을 확립함

나. 최인접 · 최적정 헬기 즉시 출동 원칙 확립

○ 관할 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깝고(최인접) 임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최적정)** 헬기를 즉시 투입함

○ 남부 권역 시범 운영 결과, 1회 출동당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km 비행거리를 단축**하여 구조 골든타임을 획기적으로 확보함

다. 실시간 운항 정보 제공을 통한 비행 안전성 강화

○ 출동 중인 조종사에게 실시간 기상 정보 및 운항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비행 안전성을 높임

○ 과거 제한적이었던 항공 안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사고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감소시킴

라. 실시간 운항 정보 제공을 통한 비행 안전성 강화

○ 특정 지역의 헬기가 정비 중일 경우, 권역 내 다른 지원 헬기를 사전에 조정·배치하여 구조 공백을 방지함

○ 원거리 출동 감소에 따라 헬기의 운항 시간은 줄어드는 반면, 실제 필요한 임무 수행에 대한 가동률은 상승하여 **정비 주기 연장 및 예산 절감 효과**를 도출함. 현장 만족도 조사에서도 **필요성(97.5%)과 효과성(100%)** 등 긍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마.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통합 조정 및 환자 생존율 제고

○ 소방헬기를 넘어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까지 출동·조정 통제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의료 이송 효율을 극대화함

○ 기존 시·도별 지원 요청 방식에서 **환자 발생 지점 최인접 헬기 출동 체계**로 전환하여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함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체계]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정책 제언 》 [소관부서 : 소방본부]

○ 전북자치도는 2023년 4월 1단계 시범사업부터 **참여**하여 국가 통합출동 체계의 초기 안착에 선제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동부권 산악지대나 타 시·도 경계 지역 사고 발생 시** 관할을 불문한 신속 대응으로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함

○ 전국 전면 시행에 따라 타 시·도 헬기가 전북 내륙까지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소방본부 차원의 유기적인 무선 통신망 정비와 협업 매뉴얼 고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 이번 정책은 행정 관할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도민 생명 보호'라는 실질적 가치를 우선시한 행정 혁신 사례**로 평가됨. 전북소방본부는 국가 통합 관제 시스템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항공 구조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최적의 항공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야 함

※ 전북 소방헬기 운영 현황

- **운영 대수: 1대**(기존 노후 1호기를 신규 2호기로 1:1 교체하여 운영 중)
- **보유 기종: AW-139**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 제작 중형 다목적 헬기)
- **운영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항공대** (전북 장수군 장계면 소재)
- **기체 교체 현황: (구) 1호기:**BK117-B2 (1997년 도입 ~ 2023년 퇴역 / 약 26년간 운영)
  (신) 2호기:AW-139(2023년 5월 취항및 전면 배치)
- **주요 성능:** 최대 시속 306km, 항속거리 933km, 최대 17명 탑승 가능하며 야간 투시경(NVG)과 기상레이더를 탑재하여 주·야간 전천후 구조 임무 수행이 가능함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소방기동장비 현황(2026.01.)」>

9.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 (교육부)

◇ '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26.시범사업 추진)
◇ 시범 사업을 통해 연간 12,597톤 온실가스 감축 (소나무 191만 그루 식재 효과)
◇ 태양광 설비를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직접 탐구하는 교육자원으로 적극 활용
◇ 교원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태양광 설비 활용 기후·생태전환교육의 현장 안착 지원

1 추진배경

○ **에너지 수입의존도**('24년 94%)가 **높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정*** 및 **가격 변동성**이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

*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 에너지 수급교란·가격변동 우려상존

【대통령 지시사항 ('25.12.12.)】
학교의 전기요금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태양광**을 포함한 **자체 발전시설 확대방안**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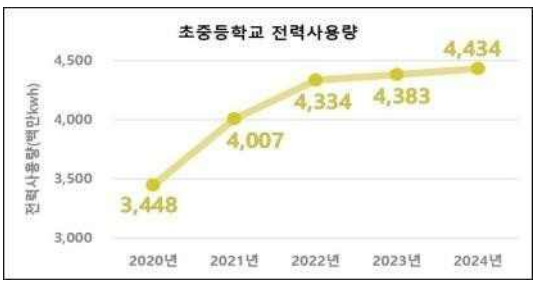
○ 정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른 **학교**의 **역할 필요**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8년 배출량 대비 '30년까지 40% 감축

○ **학생들**이 **탄소중립** 및 **에너지 사용·생산**을 **직접 경험**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실천 공간**으로서 **학교**의 **역할** 강조

2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시설 고도화 및 기자재 다양화 등에 따른 **학교 전기사용량 증가**와 **교육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학교 재정부담 가중**





- **국공립 초중등학교 태양광 설비 보급률**은 **34.6%**에 불과 ('25기준)

○ 학교 태양광이 **인프라 구축**에 **한정**되고, 학교급별 **교육모델**과 **수업사례**가 **부재**하여 **태양광 설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운영 제약**

3 비전 및 목표


Vision
학교 탄소중립 실현과 학생 환경·생태시민성 함양
목표
소규모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치
학교를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실천의 장으로 전환
사업 내용
국공립 초중등 4,378교 태양광 발전 설비 확충
[시범사업] 400교
(신규설치 260교 + 개별사업 140교*)
* 공간재구조화, 학교복합시설 등 준공분
[확대사업] 3,978교
(세부사업별 물량 추후 결정)
※ 1) 설치가 곤란한 학교
- 소규모학교(2,274교), 노후학교(97교)
2) 사립학교는 기후에너지부에서 별도 추진
태양광 설비 활용 교육모델 개발 보급 및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학교급별 교육모델 개발
전문가 컨설팅 지원
[확대사업]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교사 역량강화 연수
◇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 선도학교 지정·운영
※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학교 및 소속 교원 대상으로 추후 확대사업 세부물량 확정에 따라 조정
사업 기간
'26. 3. ~ '30. 12. (5년간)
'26년 시범사업 추진 후 '30년까지 본 사업 추진
※ 종합 추진계획은 '26년 하반기에 수립 예정
재원
[시설분야] 보통교부금
시범사업은 교육청별 추경시기가 불분명하고, 시설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교부금(433억원)으로 추진
※ (지원단가) kW당 3,330천원
[교육분야] 특별교부금
시도별 태양광 설치 학교 수 및 수요에 따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지원

4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 계획

□ 사업개요

○ **(사업대상) 국공립 초중등 400교** (신규설치 260교, 개별사업 140교*)

* 공간재구조화, 학교시설복합화 준공 등에 따른 설치

○ **(사업기간) '26. 3. ~ '27. 2.**

○ **(설치용량) 학교당 50kW*** 내외(자가소비형)

* 태양광 패널 크기 약 4m × 40m

○ **(소요예산) 특별교부금**(지역현안) **433억원** 이내

※ 50kW 설치 시 교당 166백만원 (단가: 3,330천원/kw)

○ **(지역별 배분)** 태양광 미설치 학교 중 **설치 가능 학교 수*** **비율, 수요조사**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별 물량 배정

* 소규모 학교(통폐합 가능성), 준공 후 30년 경과 건물만 보유한 학교(개축 가능성) 제외

□ 태양광 발전 정보 통합관리 체계 마련

○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태양광 발전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활용 현황 등 **태양광 정보 통합관리 기반 마련**

- **이상징후*** **감지** 시 **문자메시지 자동발송** 등 **관리업무부담 완화**

* 발전량 급감, 통신에러 발생, 월간 발전데이터 누락 등

○ **각종 수치**(발전량, 온실가스감축량 등) **자동산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 사업모델 도출, 교육자료 제공** 등 **데이터 기반 성과분석** 가능

□ 안전관리 강화

○ **(안전장치강화) 아크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여건에 따라 화재감지긴급차단기(RSD) 등 **화재예방설비 병행** 설치

* 태양광설비 직류 전로에 아크 발생 시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

○ **(법정검사주기 단축)**「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검사**(4년 주기)를 **1년마다 실시**하여 안전관리 강화

□ 체험형 학습공간 및 전시형 교육설비 구축

○ **(체험시설) 학생들**이 **태양광 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시설** 구축

※ 간이 태양광 모듈을 통해 햇빛의 세기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발전량 차이 관찰 등

○ **(정보제공) 태양광** 실시간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공

5 태양광 설비 활용을 통한 K-GEP 운영

□ 태양광 설비 활용 체계적 교육 기반 구축

○ **(교육모델 개발)** 기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교육자료를 취합·분석하여 학교 **태양광 설비**를 **활용**한 **교육모델 개발·보급**(26.上)

- **교육모델 활용**을 위한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26.下~)

○ **(교육자료 제공)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에서 신재생에너지 **교육자료**를 **통합 제공**하여 **체계적인 교육기반** 마련('26.下)

○ **(프레임워크 개발) 태양광 설비 연계 교육**을 포함한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K-GEP)'**를 **개발**하여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생태전환교육 구현**('26.下)

※ GEP(Greening Education Partnership): 유네스코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후변화교육 파트너십으로, 모든 학습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4가지 주요 영역(학교의 녹색화, 교육과정의 녹색화, 교사훈련, 지역사회)을 중점으로 포괄적·체계적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학교시설(태양광 등), 교육과정(예. 사회과: 지구촌사람들 / 과학과: 자원과 에너지 / 실과: 기술적 문제해결과 혁신 등), 교사역량강화(태양광시설 활용수업 설계연수 지원) 등

○ **(선도학교운영) 태양광 설비와 연계하여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선도학교 지정·운영**('27.~'30.)

□ 교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교원연수)** 태양광 설비를 활용한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 대상 단계별 맞춤형 연수** 운영('27.~'30. 약,3000명 대상)

○ **(학습공동체 운영)** 태양광 설비를 활용한 **수업 공동 설계, 자료 개발** 등 교육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27.~)

○ **(우수사례 확산)** 태양광 설비 활용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권역별 교사 네트워크** 운영('27.~)

- 태양광 설비 활용 교육 **성과공유회** 및 **학교 환경교육 연구대회** 운영, **국가환경교육포털 연계 사례집 보급** 등을 통해 **성과 확산**('27.~)

6 사업 활성화 방안

○ **(지침개정)** 교육청별 **태양광 사업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개정** 추진

○ **(평가지표 반영)** 교육청 평가항목 중 「교육환경·시설 개선 이행 노력」 지표에 **태양광 항목 신설**, '27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26.下)

○ **(부처협업)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학교별 전력사용량**(한전 원격검침량)이 **실시간 연동**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부** 및 **한전**과 **협업**

- **기후부·한국에너지공단**과의 **협업**을 통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후에너지 정책, 기술 전문성**과 **교육**을 **결합**한 **맞춤형 컨설팅** 운영

○ **(만족도조사)** 사업 **만족도 조사**를 통한 **환류, 우수사례 발굴·공유**

7 기대효과

□ 학교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

○ **(전기료 절감) 학교별** 태양광 **50kW** 설치 시 **연간 약 68MWh/교**의 **전력생산***을 통해 **전기요금 10,000천원/교**** **상당 절감효과** 기대

* 68MWh=50kW×24h×15.97%(설비이용률)×98%(인버터효율)×365일/1000

** 9,803천원=68,550kWh×0.143천원/kWh(24년 한국전력통계 교육용전기 기준단가)

- 시범사업 **400교 적용** 시 **연간 약 27,200MWh 전력생산**(전기요금 40억원 상당)

○ **(온실가스 감축) 학교별** 태양광 **50kW** 설치 시 **연간 31.49톤/교**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소나무 4,771 그루 식재 효과) 기대

* [이산화탄소 저감] 31.49tCO_2eq=68,550kWh×0.4594tCO_2eq/kWh÷1,000

[식재환산] 4,771그루=31.49tCO_2eqx1,000÷6.6$kgCO_2eq$(소나무 1그루 CO_2흡수량)

※ [참고] 에너지온실가스종합정보 플랫폼 및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국립산림과학원)

- 시범사업 **400교 적용** 시 **약 12,59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소나무 191만그루 식재효과)함으로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30년까지 전력부문 67백만톤 감축(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활성화*로 인한 지역기반 중소기업 생태계 확장 및 관련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단계 경쟁입찰을 실시하거나 우수조달업체 선정(지역업체 선호)

□ 학교 태양광 설비의 교육적 활용도 향상 및 인식 제고

○ **(교육적활용도 향상)** 학교 내 **태양광 설비**를 **교육자원**으로 **활용**하여 **기후변화·에너지문제**를 삶과 연계한 **데이터기반 체험형교육**으로 **연계**

○ **(탄소중립 인식 제고) 태양광 설비**를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의 **실천적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학생인식** 및 **실천역량 제고**

8 추진일정

○ (2월) 사업 추진계획 수립·발표

○ (3~4월) 시범사업 학교 확정 및 특별교부금 교부

○ (11월) 종합 추진계획 수립·발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추진현황 》

[소관부서 : 시설과]

○ 지역별, 학교급별 태양광 설치 학교 현황 (2026.1.1.기준)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유	8	2	1	1		1	2								15
초	22	18	11	10	9	6	15	6	2	1	1	2	7	5	115
중	6	3	4	1	5	2	5	2			1		4		33
고	3	5	4	2	3	2	5	1	1	2	1	2	1	4	36
특수		1													1
계	39	29	20	14	17	11	27	9	3	3	3	4	12	9	200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전북본부, '26.1.]

≪ 연구요약 ≫

◇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3년까지 20여 년간의 전국 지자체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고령화율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 변수 추정 기법을 도입하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심층 분석함.

◇ 분석 결과 고령화는 단순히 예산의 총 규모를 변화시키기보다 **재정의 구조적 자율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중층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고령화율 상승은 **지방세입의 감소**와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초래하여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를 유의하게 하락시킴. 특히 세출 구조에서 **복지 및 보조사업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정책 추진 여력이 잠재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이 확인됨.

◇ 아울러 광역단체의 **공기업 부채 증가**와 기초단체의 **자산 매각을 통한 대응** 등 재정건전성의 질적 악화 경로가 발견되어 향후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고령화 취약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재정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1. 연구배경 및 목적

○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 약화와 복지 수요 폭증이라는 이중고를 야기함. 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초적인 경제 기반을 흔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존 연구들은 단순 상관관계 분석에 그치거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으나, 본 연구는 **218개 기초지자체와 17개 광역지자체**를 망라하는 장기 패널 데이터를 통해 고령화의 실질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함. 특히 지역 경제 상황에 따라 고령화율이 결정되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5년 전 연령 구조를 도구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 이를 통해 고령화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세입·세출 구조,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지자체가 직면할

구조적 재정 위기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아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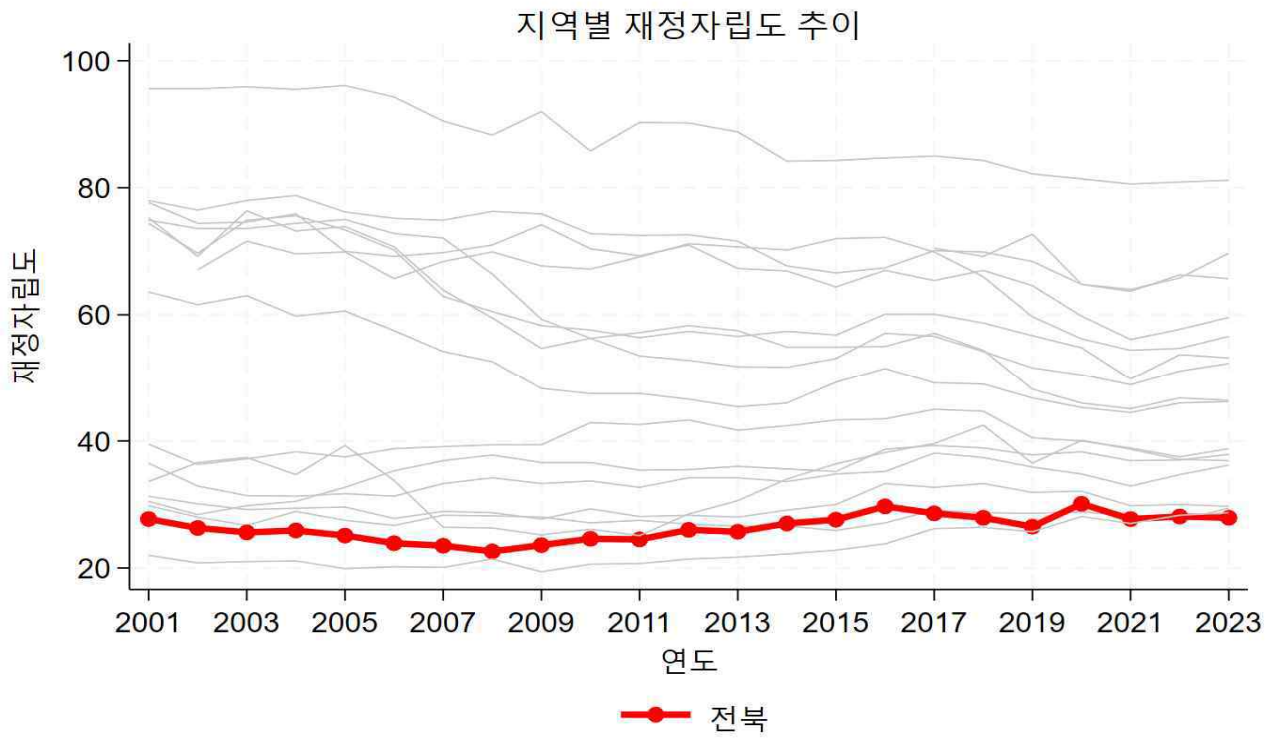
2. 주요 내용(요약)

1) 지방재정 자립 능력 약화 및 자율성 저하

- 고령화율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전체 예산 규모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았으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확실하게 하락**시킴. 고령인구 비율이 1% 증가할 때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약 0.788~1.08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자체 수입 위축을 이전재원이 보전하며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으로,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의 독립적 가용 재원**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음.

[그림 1] 광역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출처: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p.20>

- [그림 1]에 따르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 27.7에서 2023년 27.9로 정체상태이며, **2023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함

2) 세입 구조의 중앙의존성 고착화 및 매칭 부담 가중

- 세입 항목별 분석 결과,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지방세 수입은 유의하게 감소(1.49~1.68%)하는 반면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재원 의존도는 심화**됨. 특히 고령화 취약 지역일수록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등 노인 복지 관련 법정 의무 지출을 위한 보조금 유입이 폭증함

-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부담**을 동반하므로,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정적 경직성**은 더욱 심화되는 모순적 구조를 형성함

[표 1] 1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자체수입, 지방세입,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

	(1) TWFE	(2) TWFE	(3) IV	(4) IV
로그 자체재원	−1.438*** (0.221)	−1.465*** (0.247)	−1.312*** (0.176)	−1.301*** (0.186)
로그 지방세입	−1.674*** (0.247)	−1.680*** (0.275)	−1.523*** (0.195)	−1.490*** (0.210)
로그 세외수입	0.328 (0.690)	0.310 (0.727)	0.468 (0.588)	0.493 (0.617)
설명변수	N	Y	N	Y
Observations	370	370	370	370

주: 1. *** : 1% 수준에서 유의, ** : 5% 수준에서 유의, * : 10% 수준에서 유의. 2. 괄호 안의 표준오차는 같은 광역시도의 다른 시점 간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강건한 표준오차. 3. 열(2)와 열(4)의 설명변수에는 지역의 실업률과 5년 전의 지역내총생산이 사용되었다.

<출처: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p.25>

- [표 1]를 보면, 분석 결과 고령화율 상승은 **지방세입과 자체 수입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켜 지자체의 **재정적 자생력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중앙정부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됨

3) 지출 구조의 편중 및 지역 성장 투자 기능 약화

- 세출 측면에서는 지역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자체 사업 비중이 감소**하고 사회복지 등 보조 사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세출 구조의 비탄력성**이 확인됨

[그림 2] 광역지자체별 자체사업비중 변화



<출처: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p.16>

- **전북의 사회복지 비중**은 2008년 약 29%에서 **2022년 약 38%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특히 전북은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 지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고령화율 1% 증가 시 **자체 사업 예산**은 **1.197~1.228% 감소**하는 반면, 보조사업 예산은 1.233~1.413% 증가함. 이는 지방재정이 점차 복지 서비스의 전달 창구로 고착되면서, 지역의 미래 성장을 담보할 **신산업 투자 및 인프라 확충 동력**이 상실되고 있음을 시사함

4) 재정 건전성의 질적 저하 및 잠재적 채무 위험 노출

- 재정 건전성 분석 결과, 광역지자체는 직접 부채보다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의 유의한 증가(4.4~6.5%p)가 관찰됨. 이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도시개발 손실 및 **공공교통 부문의 비용 구조 악화**와 직결됨

- 기초지자체의 경우 고령화 심화 시 자산은 감소(0.21~0.25%)하고 부채는 증가(1.22~1.24%)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는 단기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재산 매각 등 고육책**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기적 재정 체력 저하를 방증함

[표 2]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유형별 채무에 미치는 영향

	(1) TWFE	(2) TWFE	(3) IV	(4) IV
예산 대비 채무 비율	−0.140 (0.141)	−0.156 (0.137)	−0.173 (0.128)	−0.208 (0.133)
공기업 부채 비율	4.404 (2.677)	5.667* (2.864)	5.537** (2.355)	6.553** (2.750)
로그 민자사업 재정부담액원	0.716 (2.453)	−0.860 (1.586)	−0.154 (2.229)	−1.339 (1.402)
보증채무비율	−2.919 (2.843)	−3.760 (3.239)	−3.067 (2.436)	−4.113 (3.116)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원	−1.466 (1.436)	−0.355 (1.400)	−5.175 (4.540)	−1.267 (1.28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0.385 (0.668)	0.733 (0.618)	0.086 (0.789)	0.541 (0.593)
재정자금대비 차입부채비율	−2.161 (2.904)	−1.918 (3.023)	−2.612 (2.584)	−2.618 (3.055)
설명변수	N	Y	N	Y
Observations	196	196	196	196

주: 1. *** : 1% 수준에서 유의, ** : 5% 수준에서 유의, * : 10% 수준에서 유의. 2. 괄호 안의 표준오차는 같은 광역시도의 다른 시점 간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강건한 표준오차. 3. 열(2)와 열(4)의 설명변수에는 지역의 실업률과 5년 전의 지역내총생산이 사용되었다.

<출처: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p.37>

- [표 2] 고령화율이 광역지자체 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지방정부의 직접 부채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은 유의하게 증가(4.4~6.5%p)하며, 이는 고령화로 인한 **공공교통 비용 부담** 등이 공기업으로 전이되어 **잠재적 재정 위험**을 높이고 있음을 방증함

3. 결론

○ 고령화는 지방재정의 외형적 규모보다 **실질적 자립 역량과 건전성 지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며,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기능적 수행 기관**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큼

○ 단기적으로 고령화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복지·보건 전달 체계 통합 및 차등 보조율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세입원 다변화**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통합재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재정 위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함

○ 단년도 예산 편성 체계를 넘어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재정 계획의 제도화**와 인구 구조 변화에 조응하는 세입·세출 구조조정 로드맵 마련이 필수적임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소관부서 : 정책기획관 등]**

○ 전북은 2042년 고령인구 비율이 현재보다 **20%p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본 연구에 따르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 27.7%에서 2023년 27.9%로 지난 **20여 년간 27%대에서 장기 정체** 중이며, 이는 2023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치임

○ 이러한 자생적 재정 기반의 한계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라는 외부 충격에 대한 전북의 대응력이 매우 취약함을 방증하며, 재정 파탄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함

○ 고령화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와 법정 복지비 급증**은 이전재원 의존도를 높여 지자체의 **재량적 정책 기획권을 약화**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예산을 구축(crowding-out)하는 원인이 됨

○ 이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에 **차등 보조율 적용 및 국고 보조율 상향**을 강력히 건의하여 지방비 매칭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지자체 간 행정 서비스 공동 제공을 통한 지출 효율화와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등 전북형 신규 수익 모델 발굴을 통해 재정 자율성을 회복해야 함

2. 2026년 전북연구원 10대 연구 AGENDA [전북연구원]

<< 연구요약 >>

◇ 도민경제, 농생명산업, 문화·체육·관광, 균형발전, 도민행복 등 5대 분야를 정책적 틀로 설정하고, 분야별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10대 연구 아젠다 확정

1 도민경제 : 포용적 경제로 다시 일어서는 기업 · 소상공인

Agenda 1 : 피지컬AI· RE100 대전환의 선도모델 정립과 확산

주요과제 : 피지컬AI 기반 첨단 모빌리티 산업 전환을 위한 전북형 모델 마련방안, 전북 Physical AI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략 연구, 전북자치도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기초 연구, 전북형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모델 마련 방안, 새만금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여건 기초조사

Agenda 2 : 전북 성장엔진 고도화로 산업혁신 생태계 강화

주요과제 : 전북자치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기본방향 연구, 노화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방향 연구, 전북과학기술원 기본방향 설정 연구, K-방위산업 MRO 클러스터 조성방향 연구

Agenda 3 : 전북경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주기 밸류체인 고도화

주요과제 :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육성사업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전북형 수출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전북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연구,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민간투자유치 전략수립 연구, 전북형 지역거점 창업도시 모델 개발

2 농생명산업 : 대한민국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

Agenda 4 : 농생명산업 특화 발전과 농촌사회 혁신역량 강화

주요과제 : 스마트농업 혁신 AX 거점 육성 전략 연구, 동물헬스케어 산업 발전 방안, 전북자치도 맞춤형 메디컬 푸드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전북형 수산업 특화 발전방안 연구, 전북자치도형 특화 농촌마을 모델 발굴 및 확산 방안, 농촌주민 역량 강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3 문화 · 체육 · 관광 : K-컬처로 세계와 연결되는 전북

Agenda 5 : 문화체육관광정책의 새판 짜기와 국내 거점화

주요과제 : 제8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202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실태조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및 지역문화 진흥 계획, 제2국기원 건립 기본구상, 전북특별자치도 미식관광 활성화 방안

4 균형발전 : 정주-생활인구와 교통대동맥으로 여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Agenda 6 : 지역특화형 정주인구 역동성 회복

주요과제 : 청년 정주형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청년수당 지원사업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정책 발전 전략 연구, 전북 출생 반등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대응 방안 연구,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

Agenda 7 : 생활인구 유입·정주화 제도 고도화

주요과제 : 장기생활인구 등록제 도입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 전북사랑도민증 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 외국인정책의 전략적 대응 방향 연구, 전북자치도 E-7 계열 비자 활성화 방안 연구, 자치단체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방안 연구

Agenda 8 : 지역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축 재설계

주요과제 :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연계 지역발전전략 수립 연구, 전북 지역균형발전 권역 협의체 구성 및 공동사무 발굴 방안, 전북 중소도시 은퇴자마을 조성 전략 연구, 제5차 섬발전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전북도 대응 방안 연구, 전주권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 익산미륵사지휴게소 고속도로 환승시설(EX-HUB) 타당성 검토

5 도민행복 : 도민을 온전히 지키는 복지 · 안전 사회

Agenda 9 : 전북형 돌봄기본사회 기반 조성

주요과제 : 전북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전북형 기본사회 추진전략 연구, 전북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사업 전략 수립, 제6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Agenda 10 : 지역주도 기후·생태·환경 정책모델 선도

주요과제 :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성과관리 방안 연구, 전북형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환경영향평가 협의모델 개발, 전북 삼천리길 추진상황 점검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방안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소관부서 : 전북연구원 등]**

○ 피지컬AI·RE100 대전환, K-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2국기원 건립 등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핵심 사업으로, 연구 아젠다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전 제시를 넘어, 구체적인 국비 확보 논리 개발과 민간 투자 유치 전략** 등 **현실적인 재원 마련 로드맵**이 연구 내용에 필수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국가균형성장 전략축 재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첨단 산업 육성이나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혜택이 도내 **특정 거점 도시에만 편중될 우려**가 있어, 전북자치도 내 모든 시·군이 각자의 특성에 맞춰 상생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세밀한 **'도내 내부 균형발전' 연구**가 개선사항으로 함께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2026년을 향한 중장기 전략인 만큼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기후 위기 가속화** 등 다양한 외부 변수가 존재할 것으로 보여 **단계별 대안 연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전북자치도 고령장애인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26.01.]

≪ 연구요약 ≫

◇ 전북자치도의 고령장애인 비중은 2023년 말 기준 58.39%로 전국 평균(53.9%)을 상회하며, 특히 순창(86.2%)과 장수(85.6%) 등 농촌 지역은 장애인 대부분이 고령자인 '**초고령 장애사회**' 에 진입한 상태임

◇ 고령 장애인은 장애와 노화를 동시에 겪는 이중적 소외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노인과 장애인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어, **65세 진입 시 서비스 시간이 급감하는 '돌봄 절벽'**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열악한 이동권으로 인한 의료 미충족률(16.3%)이 높고 전문 요양 시설이 전무하여, 전북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한 **통합 돌봄 체계 구축과 전담 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됨

1. 연구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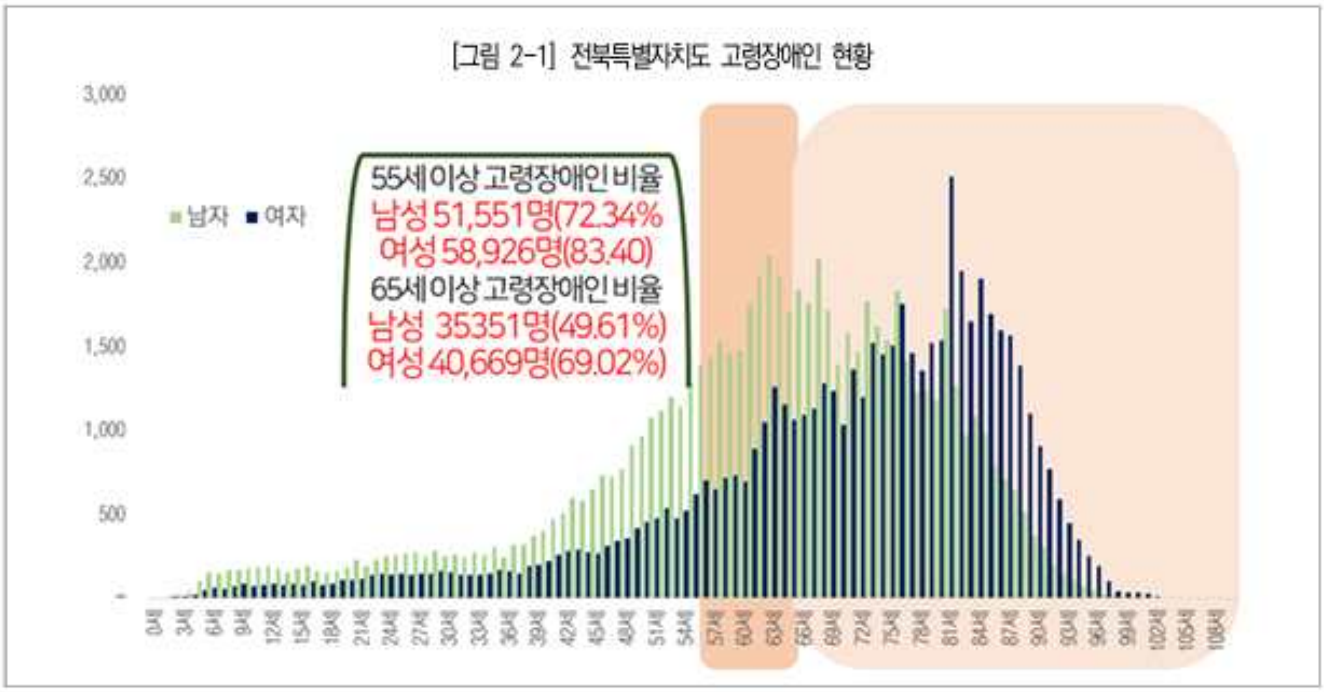
○ 향후 **2060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현재의 2.5배(약 323만 명)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과 복지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됨. 특히 고령 장애인은 비장애 노인보다 **노화 속도가 빨라 조기 노화현상**을 겪으며 질병 관리·소득 보장·사회 참여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게 됨

○ 이에 따라 중앙 정부의 분절된 서비스 체계로 인한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독자적인 고령장애인 지원 모델**을 정립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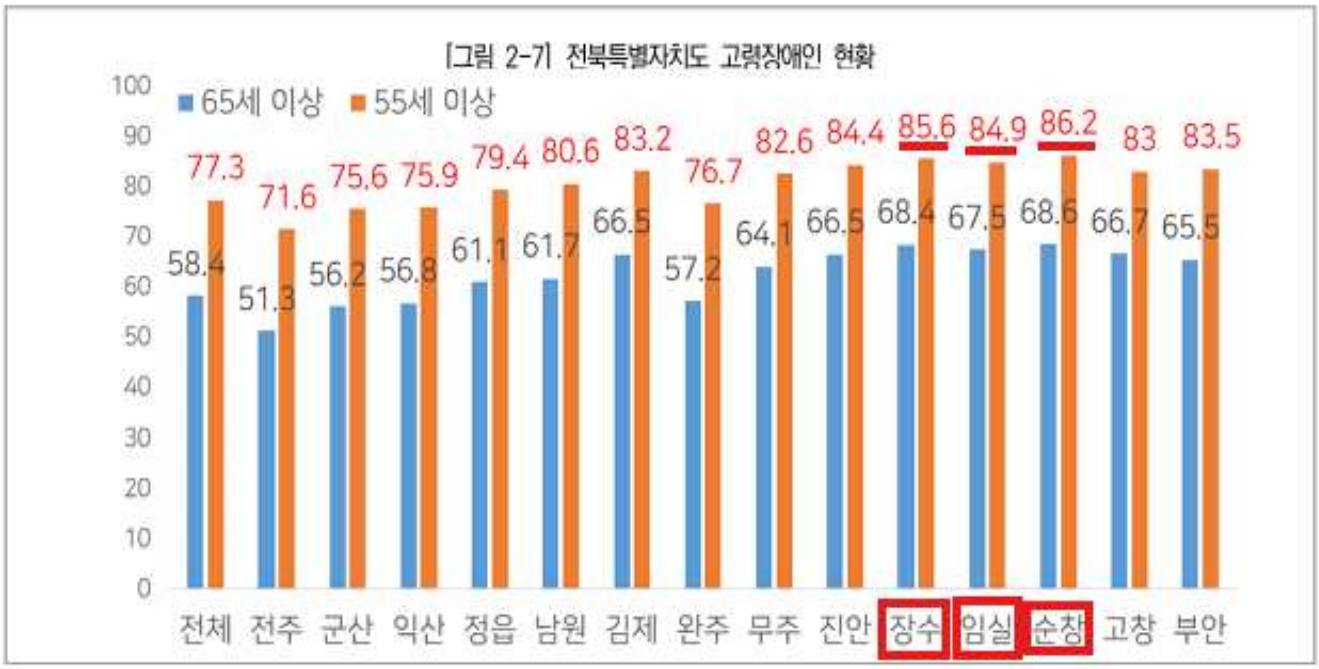
1) 인구학적 실태와 지역적 편차

- 2023년 말 기준 **전북자치도의 장애인 인구** 130,076명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75,956명(58.39%)**에 달하며, 이는 전국적 수준을 뛰어넘는 매우 심각한 고령화 수치임



<출처: 전북자치도 고령장애인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p.11>

- 고령 장애인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고령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부 지역이 시부 지역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순창(86.2%), 장수(85.6%), 임실(84.9%)**은 장애인 복지 정책이 곧 노인 정책이어야 할 만큼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음



<출처: 전북자치도 고령장애인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p.17>

- 전북도의 장애 유형별 고령장애인 현황을 보면, 장애 유형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각장애인이 8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장루요루 장애인 74.23%, 호흡기 장애 71.52% 등 고령장애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의료 및 건강관리의 실태

- 고령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병합되어 비장애인보다 노화 속도가 빠르며, **만성질환 유병률(94.7%)이 매우 높음**. 실태조사 결과 의료 미충족률은 16.3%에 달하며, 치료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병원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 부재(73.0%)'**로 나타남

- 이는 **전북의 저상버스 보급률이나 장애인 콜택시 운행이 고령장애인의 실질적 이동 동선을 보조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또한, 노화와 장애가 결합된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단순 약물 처방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음

- 특히 도내 상급종합병원 및 재활전문기관의 도심 쏠림 현상으로 인해 **군 지역 거주자의 의료 소외가 심화**되고 있음

3)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

- 전북 내 고령장애인의 경제 상태는 일반 노인이나 비고령 장애인보다 더욱 취약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20%를 상회하지만 근로 역량 부족으로 인해 **장애연금 수급률은 9.8%**에 그쳐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 장애인은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조차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1인 가구 비중 증가에 따른 고독사 위험** 또한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임. 고령 장애인 가구 중 **'단독가구(독거)' 비중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망 확충이 시급함

[표 2-26] 장애연금수급자 현황

지역	연령구간	수급자수	대상자수	고령 장애인	이용 비율	지역	연령구간	수급자수	대상자수	고령 장애인	이용 비율
전주시	18세~64세	2,913	3,921	17,454	9.05	완주군	18세~64세	816	1,001	4,700	9.85
	65세이상	1,579	2,321				65세이상	463	613		
	기타	0	0				기타	0	0		
군산시	18세~64세	1,324	1,723	9,849	9.56	진안군	18세~64세	216	254	1,531	9.99
	65세이상	942	1,244				65세이상	153	192		
	기타	0	0				기타	0	0		
익산시	18세~64세	2,054	2,516	11,522	10.96	무주군	18세~64세	178	218	1,822	7.74
	65세이상	1,263	1,657				65세이상	141	175		
	기타	0	0				기타	0	0		
정읍시	18세~64세	918	1,110	6,015	9.68	장수군	18세~64세	135	159	1,572	8.40
	65세이상	582	733				65세이상	132	165		
	기타	0	0				기타	0	0		
남원시	18세~64세	623	748	4,596	11.03	임실군	18세~64세	265	305	2,066	9.39
	65세이상	507	627				65세이상	194	247		
	기타	0	0				기타	0	0		
김제시	18세~64세	722	855	6,093	10.72	순창군	18세~64세	228	264	1,928	10.68
	65세이상	653	794				65세이상	206	249		
	기타	0	0				기타	0	0		
						고창군	18세~64세	418	493	3,619	9.12
							65세이상	330	427		
							기타	0	0		
						부안군	18세~64세	354	459	3,253	10.27
							65세이상	334	410		
							기타	0	0		

자료 : 보건복지부(2024) 장애인통계,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수급자 DATA SET 분석

<출처: 전북자치도 고령장애인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p.35>

4) 현행 전달체계의 분절성과 '돌봄 절벽'

-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은 **활동 지원 서비스의 단절**로,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기존에 받던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이 최대 월 480시간에서 **120시간 내외로 약 1/4 수준까지 급감**함

- 이러한 **'시간 삭감'은 중증 고령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으로 내몰리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전북 내 노인요양시설은 장애인의 특수한 사양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입소를 기피하거나,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임. 장애인 복지관과 노인 복지관의 서비스 중복 또는 연계 부족 역시 자원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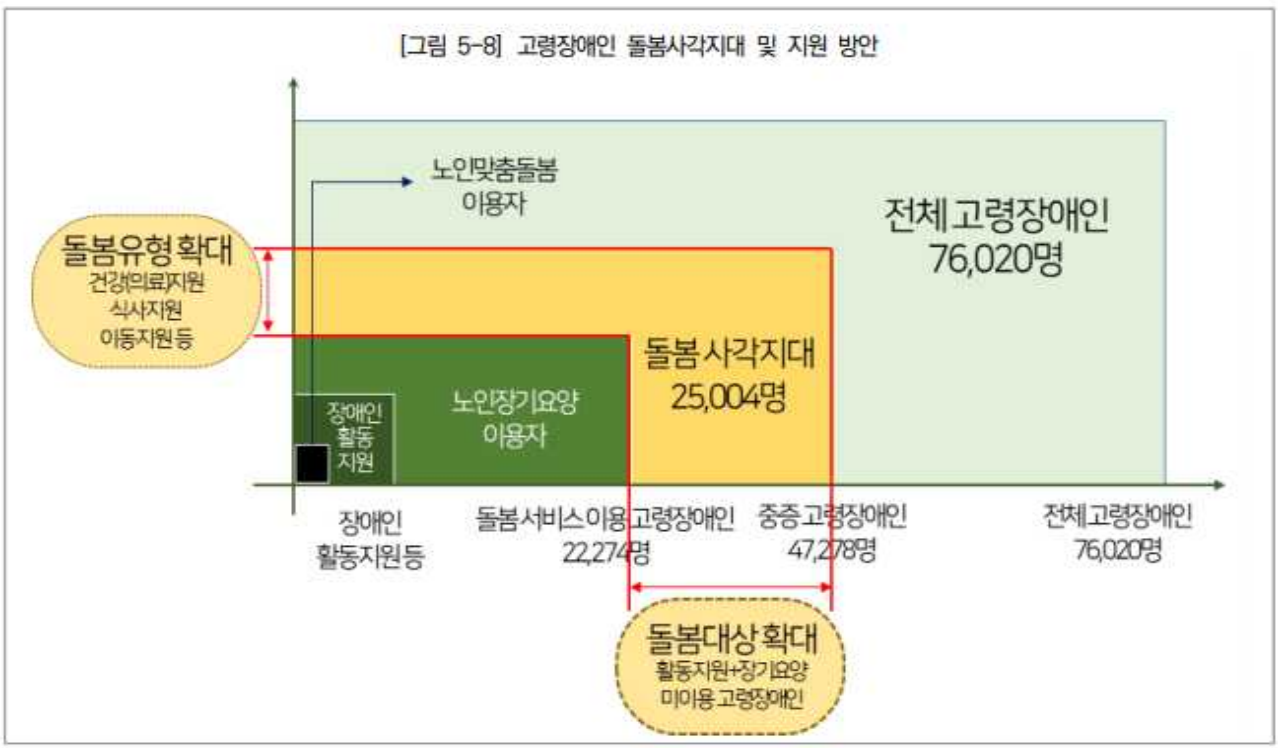
3. 결론

○ 고령장애인은 고령화와 장애라는 **이중적인 제약**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적·정신적 노화 속도가 비장애인보다 빨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함. 고령장애인은 장애 발생 시기나 유지 기간에 따라 욕구가 다르므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임

○ 현재 다양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단순 요양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안정적 주거 공간, 전문 의료 및 재활, 맞춤형 일자리, 이동 지원** 등이 장애 특성에 맞춰 패키지로 제공되어야 함

○ 또한, 고령화는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를 초래하여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심화시키므로, 이전 재원에만 의존하기보다 **지자체 스스로 세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하여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거점형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 사례 관리를 정착**시켜야 함

[그림 5-8] 고령장애인 돌봄사각지대 및 지원 방안



<출처: 전북자치도 고령장애인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p.124>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소관부서 : 고령친화정책과]

○ 전북자치도의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비중은** 58.39%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특히 **순창**(86.2%)과 **장수**(85.6%) 등 일부 군 단위 지역은 장애인 대다수가 노인인 '초고령 장애사회'에 진입함

○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 체계의 분절로 인해 **65세 전환 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기존 대비 **최대 1/4 수준으로 급감**하는 '돌봄 절벽'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고령 장애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북형 통합 돌봄 체계의 조속한 마련이 시급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2024. 9. 27. 제정)』를 기반으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촌 지역 중심의 **도비 지원을 통한 보충적 활동 지원**과 **전북형 통합돌봄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함

○ 또한 고령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94.7%)** 대비 교통수단 부재(73%)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가 심각하므로, 장애인 콜택시 확충과 농촌형 '찾아가는 재활 서비스'를 통해 물리적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고령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및 여가 지원을 확대하고, 도내 복지관 중심의 통합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이를 통해 행정 장벽 없는 안정적인 지역사회 노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임

4. 2025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 - 자영업 구조 변화 속 자영업 경영 실태와 취약성 진단 및 정책 과제-[국회미래연구원]

≪ 연구요약 ≫

◇ 국회미래연구원이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2026.2.)
◇ 전국 자영업자 3,088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 온라인 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
◇ 자영업 시장 상황을 비용 구조, 부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이동 등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자영업 시장의 구조 변화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자영업은 전체 취업자의 약 23%를 차지하는 핵심부문이나, 최근 구조적 전환 압력이 심화되고 있음
- 인구 감소·고령화, 내수 둔화, 플랫폼 확산, 비용 구조 경직, 금융환경 변화가 중첩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매출 회복 지연, 부채 누적, 고정비 부담 지속

○ 자영업 시장의 구조 변화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재설계를 위한 근거 제공
- 창업 경로, 코로나19 전후 매출 및 비용구조의 변화, 디지털 전환 및 플랫폼 의존, 경영 애로, 재창업 경험, 사회안전망 및 정책 수요, 코로나19 시기 정부 정책의 체감 효과 등을 조사

2. 조사 방법

○ 전국의 자영업자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를 진행
- 업종, 지역, 종사자 규모, 대표자 연령, 유점포/무점포 등을 고려하여 표본 배분 및 방문 면접 조사(일부 무점포 업체는 온라인 조사 병행) 실시

- 본 조사 이외에도, 자영업 위기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약 22명에 대해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

2 주요 분석 결과

1. 창업 이전 경로와 업종 선택

○ 자영업 진입은 창업 선택이라기보다 노동시장 이동의 결과

- 창업 직전 임금근로자 출신이 다수(63.5%)로, 은퇴·이직 등과 밀접하게 연계됨
- 고령층일수록 기존 자영업 경험(50대 26.5%, 60대 27.5%)이나 무직 상태에서의 진입(70대 30.1%)이 늘어나 생계형 성격이 강화됨

○ 동종업계 진입·재진입의 경로 의존성 뚜렷

- 개인서비스(80.1%), 수리업(77.8%), 음식업(69.4%)의 동종 진입이 강하며, 폐업 후 재창업자의 83.6%가 동일 업종으로 재진입

○ 창업 준비도의 이질성 존재

- 평균 실무 경험은 2.1년으로 짧고, 1년 이하 단기 경험 창업이 29.1%
- 청년층은 단기 경험 중심(39세 이하 1년 이하 41.9%), 70대 이상은 장기 경험 비중(8년 이상 35.3%)이 상대적으로

2.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 코로나 이후 매출 회복은 불완전, 비용 구조는 경직화, 부채는 상승

- 매출이 코로나 이전 1억 7,144만 → 코로나 기간 1억 4,050만 → 코로나 이후 1억 7,240만 원으로 반등하여 이전 수준을 회복함
- 그러나 영업비용이 1억 1,992만 → 1억 2,463만 원으로 상승하며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심화
- 현재 부채 보유율은 44.7%, 평균 부채액은 5,690만 원으로, 엔데믹 이후 부채 수준이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3. 경영애로 및 위기요인

○ 핵심 경영애로 사항은 비용과 경쟁, 외부 위협은 내수 둔화가 중심

- 원자재·재료비(68.7%), 경쟁 심화(66.2%), 신규 고객 확보(65.9%), 임대료(60.5%) 등이 핵심 애로사항으로 조사됨
- 온라인 판매를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배달료 등 금전적 부담이 큼
- 외부적 요인으로 전반적인 소비 여력 축소(77.6%)를 최대 위협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소매업은 온라인·플랫폼 확산을, 다른 업종은 상권 약화를 우려

○ 연령·업종별 디지털 격차 존재

- 디지털 활용률은 39세 이하가 79.8% vs 70대 이상 32.9%로 격차는 46.9%p
- 디지털 활용자는 비용 부담(63.2%)이, 미활용자는 사용법 어려움(43.4%)이 핵심 제약임

4. 창업 이후 및 재창업 경험

○ 창업 동기는 기회형과 생계형이 혼재, 동일 업종 재창업 다수

- 창업 동기는 수익에 대한 기대(48.9%)가 가장 크나, 실직·은퇴(32.5%)와 구직 실패(30.2%)에 따른 생계형도 큼
- 음식업을 중심으로 재창업 비중이 높으며(3회 이상 7.1%), 재창업자의 대다수가 동일 업종으로 복귀(83.6%)하고 있음

○ 폐업 장벽이 '버티기'를 구조화

- 대출 일시상환과 철거비 부담이 폐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고금리 의존, 플랫폼 비용, 관리비, 인력난, 건강 악화가 중첩되는 현상이 나타남

○ 재창업자는 매출 규모는 크지만, 비용 및 부채 부담으로 수익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

- 재창업자 평균 매출액은 1억 9,700만원으로 최초창업자(1억 7,300만원)보다 높고, 평균 종사자 수 또한 2.0명으로 최초창업자(1.7명)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향

- 그러나 평균 순이익은 재창업자(4,450만원)가 최초창업자(4,850만원) 보다 더 낮았으며, 이와 함께 총 부채액 및 대출 이자비용 또한 높아 재창업자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

5. 사회 안전망 및 필요 지원

○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저조

- 사회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18.3%, 노란우산공제 35.2% 등이며, 미가입 이유는 필요성 미인식(57.9%), 비용 부담(23.2%), 절차 복잡(12.1%) 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의 정책 수요는 비용 완화 중심

- 건강보험료 경감(76.0%), 세금·공과금 완화(86.3%), 금융지원(77.7%)이 최우선으로 꼽혔으며, 폐업 후 재기 지원(52.7%)에 대한 요구도 상당

6. 온라인 점포 업체 특성

○ 온라인 거래의 핵심 부담은 수수료

- 판매 수수료(78.3%)가 가장 큰 애로, 광고·프로모션 비용(18.1%)이 뒤따름
- 배송비(50.5%), 물류 인프라(14.8%), 반품 부담(13.8%)도 구조적 문제

○ 온라인 점포 운영을 선택한 이유는 온라인 시장 성장 전망(50.2%) 때문

- 그 왜 임대료 등 초기비용 절감이 24.3%, 진입 장벽 낮음이 10.6%, 시간 및 장소 제약 적음이 7.4% 등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존 점포 영업 부진 때문에 온라인 창업으로 전환한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권 쇠퇴와 고정비 부담 등에 대응하는 방어적 전환의 성격의 디지털 전환일 가능성

7. FGI 통합결과 및 시사점

○ 자영업 위기는 재무 - 판로 - 운영의 복합 문제

-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2금융권·카드론 등 고금리 의존과 코로나 대출

상환 재개가 중첩되며 상환 부담이 경영의 핵심 제약으로 작동

- 배달앱·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가 사실상의 고정비로 기능하고, 정산 지연과 알고리즘 리스크가 자금 경색을 심화
- 불투명한 관리비 인상, 구인난, 장시간 노동이 누적되며 건강 악화와 경영 지속 가능성 약화가 병존

○ 사업 방식과 연령에 따른 위기 양상 차이

- 재창업자(특히 50~60대)는 과도한 초기 투입과 2금융권·카드론 의존이 문제
- 온라인 중심 사업자는 플랫폼 비용과 알고리즘·정산 리스크에 취약
- 중장년층은 디지털 운영 어려움이 두드러짐

○ 폐업 장벽이 버티기 구조를 고착화 시킴

- 폐업 시 대출 일시상환 의무와 고액 철거비가 결합된 폐업 장벽으로 적자 상태에서도 퇴장이 어려운 구조이며 비자발적 버티기가 반복됨
-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상환유예, 철거비, 연착륙 지원 요구가 확인됨

○ 정책의 한계와 현장의 요구: '안전한 퇴로'와 비용구조 개선

- 코로나 대출 유예는 완충 역할은 했으나, 종료 이후 상환 부담이 급격히 확대
- 현장은 단순 컨설팅이 아니라 상환유예, 철거비 지원, 관리비 투명화, 플랫폼 견제, 체험형 창업교육, 초기 고정비 완화를 요구

2 정책적 시사점

○ 자영업 정책은 '창업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진입 - 유지 - 퇴장을 포괄하는 전 과정 대응 체계로 전환할 필요

- 자영업 진입의 63.5%가 임금근로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나 자영업은 창업이라기보다 노동시장 전환의 결과로 작동하며, 특히 고령층에서는 생계유지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향이 뚜렷

- 이에 따라 자영업 정책은 창업 지원을 넘어 재취업 지원, 전직 연계, 진입 이전 위험 진단 등을 포함하는 노동시장 연계형 정책으로 확대될 필요

○ 단기적으로는 부채 상환부담 완화와 '안전한 퇴로' 구축이 가장 우선적인 정책 과제

- 부채 고부담층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폐업 시 대출 일시상환 및 철거비 부담으로 적자 상태에서도 영업이 지속되는 구조가 확인됨
- 신규 대출 확대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상환부담 완화, 구조조정 연계, 퇴장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연착륙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이 필요

○ 중기적으로는 비용구조 개선과 경영 안정성 제고를 통해 수익 기반 회복을 지원할 필요

- 매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비용 상승과 플랫폼 수수료, 세금, 공과금 부담으로 수익 회복이 제약되는 구조가 확인됨
-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와 함께 플랫폼 비용 부담 완화, 운영 효율화 지원 등 비용구조 개선 중심 정책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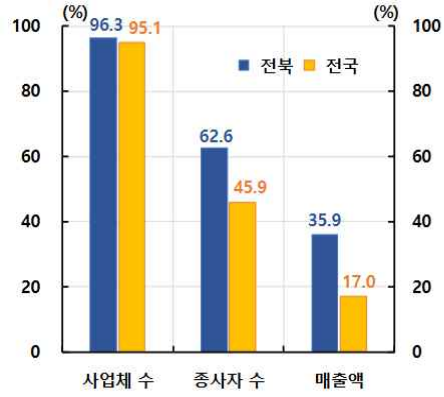
○ 중장기적으로는 진입구조 개선, 업종 전환 지원, 사회안전망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 확보 필요

- 동일 업종 재진입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낮아 구조적 위험이 누적되는 경향이 나타남
- 진입 이전 위험 진단, 선택적 업종 전환 지원, 사회안전망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자영업의 구조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소관부서 : 일자리민생경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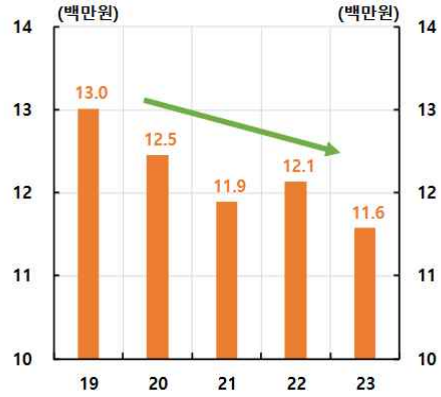
○ 소상공인이 전북 내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22년 기준)은 각각 **96.3%, 62.6%, 35.9%**로 강원, 제주와 함께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전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여건 점검, 2025.11., 한국은행 전북본부)

<사업체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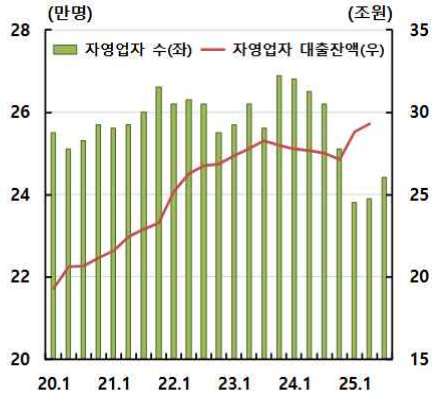
주: 1) 22년 기준
자료: 통계청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추이>



주: 1)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자료: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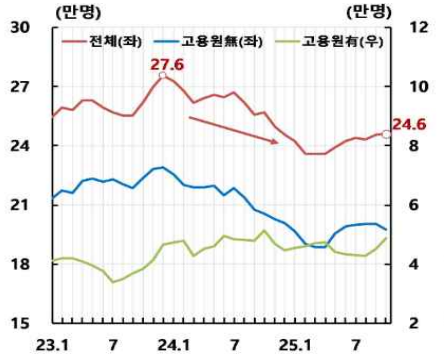
<자영업자 수 대출잔액>



주: 1) 분기 기준, 대출잔액은 2/4분기까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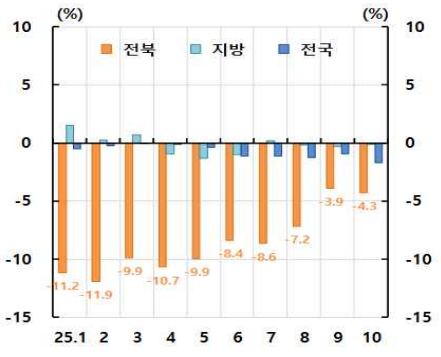
○ **전북지역 자영업자 수**는 2023년 12월 27.6만명('20년 이후 최고치)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5년 10월 24.6만명까지 하락**하였고, **2025년 들어서는 매월 전년 동월대비 4~11%의 감소폭**을 기록하며, 1~2% 내외로 등락하는 전국 및 지방(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 대비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전북 자영업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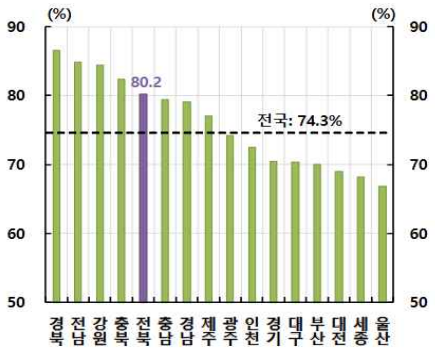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월별 자영업자 수 증감률>



주: 1) 전년동월대비
2) 지방은 경기도 제외 8개도 평균
자료: 통계청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



주: 1) 전체 자영업자 대비
2) 25.9월 기준
자료: 통계청

○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바, **사업의 실효성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같은 조례제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방향 및 지원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예산 현황과 향후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6.1.22.]

‹‹ 연구요약 ››

◇ 2026년 역대 최대 AI 예산 편성
◇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정부 AI 예산사업의 성공적인 안착 필요
◇ 정부지출 성과의 AI 산업으로 확산 필요
◇ AI 예산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및 보완조치 마련 필요

□ 2026년 역대 최대 AI 예산 편성

○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AI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3배, 추경예산 대비 약 2배 증액된 9.9조원으로 확정

- AI 예산 사업수는 738개로 전년 본예산 대비 400개, 추경예산 대비 367개 증가하여 2배 수준으로 확대

<2026년 AI 예산 및 사업수>



주: 사업수는 내역사업 기준
자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정부는 AI 예산을 2026년 최초 집계)

○ AI 예산의 부문별 규모는 기술개발(2.9조원), 인프라·연구기반조성(2.5조원), AX(2.4조원), 인재양성(1.4조원), 생태계조성(0.6조원) 순

- AX 부문의 증가 규모가 가장 크며, 이는 산업·생활·공공 분야에 전면적 AI 도입으로 산업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부문별 AI 예산>

(단위: 조원)

구분		기술개발	인프라·연구기반조성	AX: 산업·생활·공공	인재양성	생태계 조성	합계
2025	본예산	1.7	0.3	0.6	0.7	0.1	3.3
	추경	1.7	1.9	0.9	0.8	0.4	5.7
2026 예산		2.9	2.5	2.4	1.4	0.6	9.9

주: AX(인공지능 전환, AI Transformation)은 산업·생활·공공부분에 전면적 AI 도입·혁신
자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정부 AI 예산사업의 성공적인 안착 필요

○ AI 3대 강국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26년에는 정부의 주요 AI 사업이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안착할 필요

○ 고성능 GPU 확보 및 배분이 2026년부터 가시화되므로, 배분결과 및 산·학·연 활용수요, 전력공급 등에 대한 점검 필요

- 정부는 2028년까지 5.2만장 이상의 GPU 확보를 목표로 정부구매, 슈퍼컴 6호기,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을 추진

· (정부구매 GPU) '25년 추경예산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NHN클라우드·카카오가 구매한 GPU 약 1만장을 '26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산·학·연에 배분한다는 계획하에 과제공모를 개시('25.12.22.~'26.1.22.)하였으며, '26년 예산을 통해 GPU 약 1.5만장을 추가 구매 계획

· (슈퍼컴 6호기) GPU 약 9천장을 보유한 슈퍼컴 6호기를 '26.6월 구축 완료 목표

· (국가AI컴퓨팅센터) 삼성SDS 컨소시엄이 해남 솔라시도를 입지로 단독 입찰('25.10.21.)하여 현재 금융심사 진행 중이며, '26년 중 SPC 설립 완료 및 센터 착공 개시가 이루어지고, GPU 1.5만장 확보 및 센터 개소는 '28년 4분기 완료 계획

- GPU의 배분결과 및 산·학·연 활용수요, 국가AI컴퓨팅센터의 수익성·사업리스크· 민간출자 확보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 또한 AI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서버 가동과 냉각 시스템 운영으로 전력수요가 크므로, 전력공급, 전기료 인상으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적절한 조치 필요

· 일반용 전기 요금: kWh(킬로와트시)당 128.47원('21년)→172.99원('24년)

-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가 고갈되어 AI 발전 속도가 둔화되는 데이터 절벽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GPU 확보에 병행하여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 필요

<정부의 GPU 확보 지원 사업>

구분	정부구매	슈퍼컴 6호기	국가AI컴퓨팅센터
세부사업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	한국산업은행출자 (AI컴퓨팅인프라확충)
사업비	'25추경~'26년 3.6조원(국비)	'23~'30년 4,482억원(국비)	'25~'30년 800억원(국비) ※ 민·관합작 SPC 설립 ※ 총사업비는 공공·민간 출자, 정책금융(국민성장펀드·기업은행) 대출 등 총 2조원 이상
GPU 구축물량	'25년 1.3만장, '26년 1.5만장	'26년 상반기 약 9천장	'28년까지 약 1.5만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2027년 최종 2개팀(예정)으로 압축한다는 계획으로 2026.1월 1차 단계평가가 완료되었으나, 독자성과 평가지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보완 방안 마련 필요

-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챗GPT·딥시크·제미나이와 같은 기초 거대언어 모델로, 우리나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GPU·데이터·인재를 3년간 집중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25년 추경예산 및 '26년 예산에 편성되었음

- '25.8월 5개팀(네이버클라우드·업스테이지·SKT·NC AI·LG AI연구원) 선정, '26.1.15일 1차 단계평가 결과 당초계획 4개팀보다 적은 3개팀(업스테이지·SKT·LG AI연구원)이 요건을 충족하여 2차단계 진출, '26년 경쟁을 거쳐 '27년 최종적으로 2개팀(예정)으로 압축 계획

· 일부 선정업체가 해외 모듈을 사용하여 '독자 AI'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사업 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성능평가기준으로 공동 벤치마크 외에 개별기업이 선택한 벤치마크를 포함하여 평가기준 공정성 논란 제기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의 취지가 글로벌 AI 모델의 국내 시장 잠식 우려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AI 벤치마크'를 통해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 성능달성'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평가 필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사업 예산>

구분	GPU 지원	데이터 지원	인재 지원
사업명	AI컴퓨팅자원 활용기반강화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 지원
2025년 제1회 추경	1,586억원	500억원	50억원
2026년 예산	미정 ※ '26.上 민간임차 제공, '26.下 정부구매 GPU 지원 예정	300억원	100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최초의 국가주도 AI연구소 설립을 통해 미래 AI 연구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나, 주요 기능의 전환을 검토 중이거나 여전히 사업계획 구체화 중이므로, 면밀한 준비 필요

-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통해 국가과학AI연구소(NAIS연구소)(400억원), 국가범용인공지능연구소(AGI연구소)(200억원) 설립을 추진 중
- 정부는 국가과학AI연구소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부설연구소 형태로 '26년 상반기 중 설립하고, 출연연 등 연구기관이 AI를 기반으로 R&D를 혁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AI 통합 플랫폼, 연구자 교류 허브 등의 역할 수행 방안 검토 중

· 이는 당초 AI 모델 개발 연구가 주요 역할인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에서 연구기관 지원 허브 구축 등의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환 타당성 및 사업목적 달성 여부 검토 필요

- 국가 범용인공지능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 설립 주체, 조직 구성, 재원소요 등 사업계획이 미흡한 상황에서 2026년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여전히 사업계획 구체화 중으로,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2025년 확대된 AI 혁신펀드의 조성 및 투자가 진행 중으로, 2026년 민간 참여 및 AI 기업 투자 실적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25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AI 혁신펀드의 경우 자펀드 결성목표 '3,000억원 이상(정부 1,500억원+민간 1,500억원 이상)' 중 '26.1월 현재 1,770억원(정부 750억원+민간 1,020억원)이 결성되어, 2026년 조성 및 투자 실적 점검 필요

□ 정부지출 성과의 AI 산업으로 확산 필요

○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지출 성과가 민간기업 AI 투자, 우수인재의 AI분야 진출 등 AI 사넙으로 확산 필요

- 글로벌AI인덱스(영국의 토터스 미디어, '25.12월 발표)에 따르면, 하위분야 중 정부지출확대에 힘입어 인프라, 운영환경, 정부전략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AI 산업발전이 요구되는 인재, 산업생태계에서 각각 13위, 17위로 낮은 수준

·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AI 인력의 해외유출 비중은 타근로자에 비해 6%p높고, 해외근무 국가 중 미국(57.3%)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전 세계 AI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풍부한 일자리와 높은 처우가 국내 인재를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

<2025년 글로벌 AI 인덱스 영역별 순위 : 상위 5개국>

국가	종합 순위	하위영역 순위						
		인재	인프라	운영환경	연구	개발	정부전략	산업생태계
미국	1	1	1	45	1	1	3	1
중국	2	2	2	7	2	2	7	2
싱가포르	3	3	3	1	3	9	10	7
영국	4	5	25	29	4	5	4	4
한국	5	13	4	2	6	4	5	1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AI 예산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및 보완조치 마련 필요

○ 정부 AI 예산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AI 산업으로의 성과확산을 위해 재정당국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AI 정책 및 예산의 타당성 및 성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보완조치 마련 필요

- 「AI 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안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25.1월 공포(시행 '26.1.22.)되었으나, AI정책 컨트롤타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강화 등을 추가한 개정안이 '25.12월 국회의결

· (위원회 소관 심의·의결 사항 추가) AI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조성 및 부처 간 조율,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AI 관련투자 방향 설정 등 국가 내 AI 인재 수와 경력 수준 등을 측정, 국가 내 인적자본이 제공하는 AI 역량수준을 평가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소관부서 : 전환산업과/청정에너지수소과]

○ 전북자치도는 '피지컬 AI'(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와 '자율제조'(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농기계 및 푸드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지역 산업의 AI 전환을 꾀하고 있음

○ 국가예산정책처가 지적한 **핵심 인력 유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카이스트, 전북대 등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관 및 네이버, SK 텔레콤 등 유기 **기업들과의 컨소시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실증단지를 기반으로 **연구 인력이 지역 내에 정주**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산·학·연 연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 지출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방향성이 발맞춰 전북자치도는 구축되는 **피지컬 AI 기술과 자율제조 시스템을 상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 기존 주력 제조업 전반으로 신속히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시정 점유율 확대**를 이끌어내는 마중물로 삼아야 함

○ 최근 현대차 그룹과 새만금에 AI 데이터센터(5조 8천억 원)를 건립예정인바, 데이터센서 가동시 전제되는 **막대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전력 수급 로드맵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사라지는 집, 사라지는 도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 연구요약 ≫

◇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지능형 관리 방안을 제시

1 증가하는 빈집

○ 국가데이터처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6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여기서 빈집이란 조사 기준일인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모든 주택을 의미함

○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상태가 지속된 주택을 대상으로 집계한 전국 빈집 수는 약 13만 4천 호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전체의 66.5%가 비수도권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내 군 지역에 46.3%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4년 전국 빈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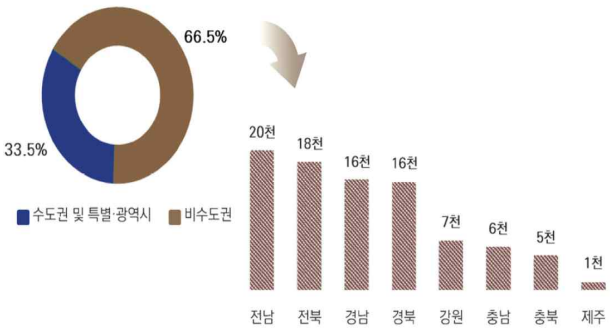
구분	시도	빈집(호)	%
수도권	서울특별시	6,711	5.0
	인천광역시	4,178	3.1
	경기도	6,714	5.0
특별·광역시	대전광역시	4,991	3.7
	세종특별자치시	688	0.5
	대구광역시	6,009	4.5
	광주광역시	2,272	1.7
	울산광역시	1,849	1.4
	부산광역시	11,471	8.6
비수도권	강원특별자치도	7,091	5.3
	충청북도	5,005	3.7
	충청남도	6,268	4.7
	전북특별자치도	18,300	13.7
	전라남도	20,006	14.9
	경상북도	15,502	11.6
	경상남도	15,796	11.8
	제주특별자치도	1,158	0.9
총합		134,009	100.0

○ 2024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자료집에 따르면, 2050년에는 324만 가구까지 증가하여 전체 주택의 1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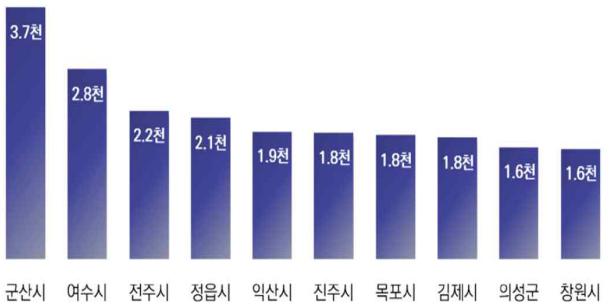
○ 빈집의 공간적 밀집과 확산은 주거 문제를 넘어, 지역 경관 훼손과 범죄율 증가, 인근 지역의 슬럼화 촉진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가중하는 복합적인 지역 문제로 발전하고 있음. 특히 빈집의 빠른 증가는 지역사회 전반의 쇠퇴를 초래하며,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 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

○ 국가데이터처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40~64세 중장년층의 수도권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음. 이들은 자연환경·주거환경을 찾아 귀농·귀촌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농촌 빈집의 핵심 수요층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비수도권 시도별 빈집(호) 순위>



<빈집(호) 상위 10위 지방도시>



2 빈집 해결을 위한 정부 대응

○ 정부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정하여 도시 빈집을 관리하고, 2023년에는 재난·범죄 위험이 큰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

○ 2025년 5월 발표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은 도시와 농촌 지역의 빈집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고, 국가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확보 지원, 지자체 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등을 골자로 하여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접근 전략을 제시함

○ 2025년 10월 국토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를 예고함. 빈집 개념을 확장하여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과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은 지자체와 소유주 등재 시 잠재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도입하여 빈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활용 가능성에 따라 철거·정비 활성화 제도 도입을 추진함

<빈집 문제에 대한 국내 대응>

구분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정의	1년 이상 거주 혹은 사용하지 않은 주택	1년 이상 거주 혹은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지역	도시	농어촌
구분	3단계 구분 (1~3등급)	2단계 구분 (일반 빈집, 특정 빈집)
관리체계	5년 단위로 실태조사 실시 및 정비계획 수립 (시장·군수)	
빈집 활용 및 관리	- 빈집을 매입하여 공익 활용 (시장·군수) - 주민 등 빈집 신고 가능 -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조치 명령 (3등급) 불응 시 직권철거 가능 (시장·군수)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시·도지사) -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빈집정비사업 시행 시 빈집에 대해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 가능 -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등 조치 명령 미행 시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로 이행강제금 부과 * 철거: 80%, 그 밖: 40%	- 빈집을 매입하여 공익 활용 (시장·군수) - 주민 등 빈집 신고 가능 - 특정 빈집에 대해 철거 조치 명령불응시 직권철거 가능 (시장·군수)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시장·군수) - 농어촌주택계량자금 우선 지원: 철거명령을 자진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 목적으로 주택개량을 희망할 경우 지원 - 빈집소유자의 책무: 빈집 소유자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빈집 관리 및 정비 의무화 -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 도입 건축기준 완화 - 이행강제금 부과 최대 500만원

3 발로 뛰는 빈집 조사, 그 한계는?

○ 2023년부터 빈집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빈집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시행함

○ 빈집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수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1~3등급으로 판정함. 구체적으로 1등급은 구조적으로 양호해 보수·활용이 가능한 주택, 2등급은 장기 방치로 손상이 진행되어 정비가 필요한 주택, 3등급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철거가 시급한 주택으로 구분함. 이러한 조사 결과는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됨

○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려는 다부처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빈집실태조사는 현장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태의 빈집이라 하더라도 지자체별로 상이한 등급 판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지역 간 조사 결과 전반의 일관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킴

○ 빈집실태조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한 문제 역시 지적됨. 공식 통계는 없으나 2022~2024년 11개 시군구의 실태조사 입찰 공고를 분석한 결과, 시군구당 평균 7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됨.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농촌빈집 재생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농촌 지역 빈집실태조사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됨. 이처럼 높은 비용과 행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5년 주기의 긴 업데이트 간격과 정형화되지 않은 통계 자료는 신속한 정책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2025년 5월 발표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에서는 빈집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임을 밝힘. 이는 시의성 제고를 위한 조치이나, 빈집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매년 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의 지속적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표준화된 평가 체계 구축과 함께 빈집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사 방법론 및 도구 개발이 시급한 과제임

<빈집실태조사 절차>



4 AI가 찾아내는 빈집, 기술이 바꾸는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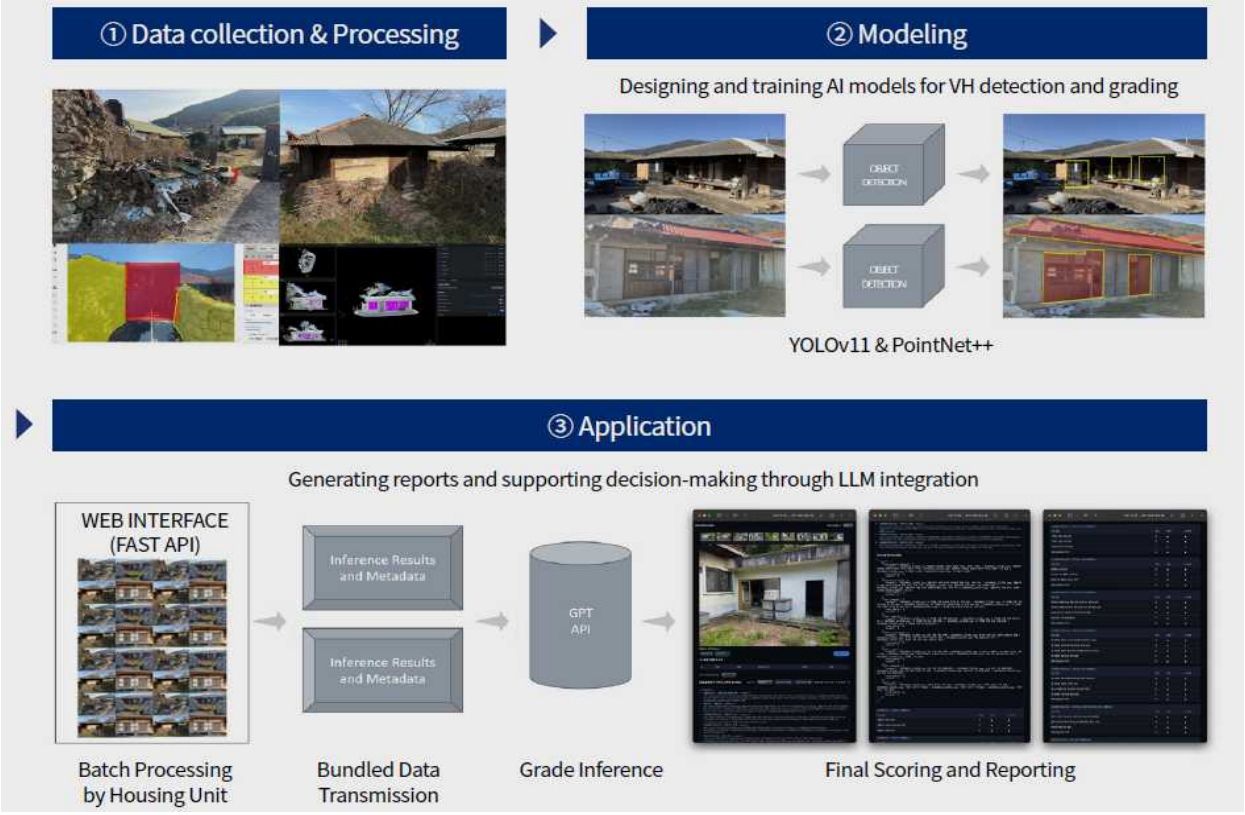
○ 영상 이미지, 공간정보, 3D 스캐닝 데이터 등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 AI 빈집 조사 기술은 현장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을 보완하는 정량적 기준을 제공하며,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 업데이트로 신속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함

○ 실제 OO군을 대상으로 영상 이미지와 NeRF 기반 3D 스캔 데이터로 구성된 다중 형식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대문, 출입문, 담장, 쓰레기, 균열 등 주요 빈집 객체 특성을 정의·라벨링하여 AI 기반 빈집 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함. YOLOv11-m(2D 데이터)과 PointNet++(3D 데이터) 모델로 학습시켜 각각 mAP@50 기준 0.85, 0.62의 탐지 성능을 확보하였으며, GPT API와 연동하여 빈집 등급 점수와 서술형 평가 리포트를 자동 생성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빈집 평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실증함

○ 향후에는 다양한 빈집 사례를 확보하여 AI 시스템을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특성(안전성, 위생·환경, 소유권)과 주변 환경, 지역 여건, 지역별 규제, 빈집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융합하여 더욱 정교한 시스템으로 발전 가능함

○ 이러한 시스템은 개별 빈집의 철거·활용 가능성 평가, 정비 우선 순위 결정, 맞춤형 활용 방안 추천까지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으로 발전 가능하며, 국가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과 지자체의 관리 역량 강화 및 효율성 제고,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등 정부의 빈집 관리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멀티모달 데이터 기반 빈집 조사 및 등급 추론 기술 연구 흐름>



5 지속가능한 빈집 관리를 위한 제언

○ 사라지는 도시와 늘어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반 지능형 관리가 필요하며 이때에는 부처간 협력, 플랫폼 고도화와 운영 기준 정립, 전담기관설립과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부처 간 협력을 위한 AI 데이터 통합)** 현재 빈집 정책은 부처별로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관리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2025년 5월 발표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은 관리 기준 일원화의 출발점이나, 범정부 데이터 통합을 위해서는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과 전국 확산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성 검증, 현장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체계의 구체적 설계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 **(지능형 빈집 관리 플랫폼으로의 전환)** 기존 '빈집애', '그린대로'와 같은 빈집 플랫폼은 매매·정보교환 기능에 한정되어 있어 AI 기반 위험 등급 산정, 철거 우선순위 결정, 활용 가능성 평가까지 지원하는 정책 집행형 플랫폼으로의 고도화가 필요함. 다만 AI 도입에 앞서 구축·운영 비용에 대한 비용-효과(Return on Investment, ROI) 분석과 함께, 등급 오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간-AI 협업 구조, 사례 확대를 통한 알고리즘 검증 및 지속적인 성능 관리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

○ **(플랫폼 운영의 제도적·윤리적 기준 정립)** AI기반 지능형 빈집 관리 플랫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운영 주체, 데이터 제공 의무, 품질관리 기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 개인정보·사유재산권 보호와 정보공개 범위를 공공 책임 주체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독일, 미국, 영국과 같이 상위 법률 차원에서 빈집 문제에 대한 공공 개입의 절차적 기준과 권한·책임 분담 구조를 사전에 제도화하는 접근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플랫폼과의 역할 분담 및 지자체 간 운영비용 분담 구조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전담기관 중심 거버넌스 구축)** 빈집 관리의 지속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권한을 갖춘 전담 기관이 필요함. 현재 한국의 농촌 빈집은행은 정보 제공과 수요 매칭에만 국한되어 있으나, 미국의 토지은행(Land Bank)은 공공 혹은 비영리 법인 형태의 준공공기관으로 빈집을 직접 취득·정비·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지역 재생을 주도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농촌빈집은행을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확대하거나 지역별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때 AI 플랫폼은 각 전담기관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되어야 함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소관부서 : 주택건축과]

○ 전북자치도의 빈집은 ‘24년 기준 18,300호로 전국 빈집의 13.7%를 차지하고 있어 전라남도에 이어 가장 많은 빈집이 존재하고 있음

○ 또한 군산시는 3.7천호로 전국에서 가장 빈집이 많은 도시이며, 전주시, 정읍시, 익산시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빈 건축물의 데이터화·권역화·맞춤화를 기반으로 위험은 신속히 제거하되(안전), 가치는 체계적으로 재창출(재생)하는 지역 자원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AI를 활용**하여 **AI 시스템을 고도화**하여야 하며, 건축물 특성(안전성, 위생·환경, 소유권)과 주변 환경, 지역 여건, 지역별 규제, 빈집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융합하여 더욱 정교한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함

○ 실제 임실군에서는 드론과 IoT 센서를 활용하여 관내 500여 채의 빈집 현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해당 빈집의 수익성과 활용 가능성, 사회적 파급력을 평가한 뒤, 귀촌 희망자나 청년 창업가, 문화예술단체 등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매칭해 주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나아가 **드론과 IoT 등으로 수집된 빈집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과 GIS(지리정보시스템) 지도에 연동**하여 **빈집 밀집 지역 등을 시각화**하여,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3차원 가상공간에서 리모델링(리노베이션)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며 비용과 디자인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Ⅲ.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 사례

1.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대상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재지정 면밀한 설계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분석 / 2025.10.) -

가. 현황

○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10년간(2022~2031년) 10조원 규모로 출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출연금 1조원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하되,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다만, 2024년부터는 광역지원계정 재원 중 40%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th></tr>
<tr><td rowspan="2">기초계정
(75%,
7,500억원)</td><td>인구감소지역 89개
(95%, 7,125억원)</td><td rowspan="2">▸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
⇨ 성과 지향적 운용</td></tr>
<tr><td>관심지역 18개
(5%, 375억원)</td></tr>
<tr><td rowspan="2">광역계정
(25%,
2,500억원)</td><td>인구감소지수,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
(1,500억원)</td><td>▸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
⇨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운용</td></tr>
<tr><td>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
(1,000억원, '24.~)</td><td>▸광역별 배분금액의 40% 출자
※ 배분기준 개정('24.1.16.)</td></tr>
</table>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 **2026년 10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대상인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재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기금 재원 배분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인구감소지역의 성과에 따른 재지정 여부, 전 지자체의 인구감소 추세와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지표 설정과 관리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전국 시·군·자치구의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조출생률,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산정한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을 우선하여 89개 시·군·구를 지정하였으며,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2026년 10월 재지정할 예정이다.

○ 기금 기초지원계정의 5%를 배분하는 '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현재 18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따라 관심지역 역시 재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지수 산정방식 및 기준]

산정방식	지표	내 용
8개 지표 종합 평가	연평균인구증감률	20년, 5년간 인구증감률 변화
	인구밀도	최근 5년간 행정구역면적당 인구(평균)
	청년순이동률	최근 5년간 청년(19-34세)연앙인구 대비 청년 순이동자수 변화
	주간인구	2020년 국가교통DB에서 추출된 지역의 주간인구 규모
	고령화 비율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65세이상 고령인구 변화
	유소년 비율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변화
	조출생률	최근 5년간 연앙인구 대비 출생아수 변화
	재정자립도	최근 5년간 지자체 일반회계 규모 대비 자체수입 평균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1년 지정 당시 반영한 2015~2020년까지 인구구조 및 재정력 변화를 확인한 연구결과를 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전국 평균 대비 뚜렷하게 높은 인구감소율과 청년순유출, 고령화율이 확인되고 재정자립도 역시 낮다.

○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인 2022년부터 현재(2025년 5월말)까지 4년간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20개 기초자치단체를 확인한 결과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1.1~△2.9%으로 청년순이동률도 연평균 △5.2% 수준이고 2022년 대비 순유출이 최대 8.5%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들 지역 중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3곳이고 관심지역이 6곳이며, 이와 무관한 지역이 11개 지역이다. 같은 기간 인구감소지역의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1.92%~△2.84% 수준임을 감안하면 비지정 지역에서도 상당한 인구구조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2025년 인구감소율이 높은 주요 지자체 현황]

(단위: 명/㎢, %)

지자체명	지정여부	인구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밀도	증감률	연평균증감률		
부산 중구	-	12,329	△8.53	△2.93	△2.0	17.86
부산 금정구	-	3,216	△7.24	△2.47	△4.1	14.19
경북 칠곡군	관심지역	238	△6.33	△2.15	△5.2	18.01
대구 북구	-	4,396	△5.61	△1.90	△2.9	15.68
부산 북구	-	6,799	△5.49	△1.86	△3.4	9.63
경남 통영시	인구감소지역	494	△5.39	△1.83	△4.6	11.45
전남 목포시	인구감소지역	4,057	△5.06	△1.71	△2.8	21.99
부산 사하구	관심지역	7,000	△5.01	△1.70	△2.9	13.04
대전 대덕구	관심지역	2,448	△5.01	△1.69	△2.5	30.80
부산 해운대구	-	7,305	△4.54	△1.53	△3.0	24.63

(단위: 명/㎢, %)

지자체명	지정여부	인구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밀도	증감률	연평균증감률		
부산 사상구	-	5,502	△4.48	△1.51	△1.9	15.46
광주 서구	-	5,846	△4.17	△1.41	△2.4	13.29
전북 전주시	-	3,086	△3.64	△1.23	△2.1	17.72
전남 여수시	관심지역	523	△3.58	△1.21	△2.3	17.90
대구 달서구	-	8,370	△3.55	△1.20	△2.8	17.65
경북 김천시	-	134	△3.53	△1.19	△3.0	10.19
강원 인제군	인구감소지역	19	△3.44	△1.16	△0.8	9.49
광주 남구	관심지역	3,406	△3.33	△1.12	△2.8	12.00
광주 광산구	-	1,759	△3.29	△1.11	△1.8	30.72
전북 익산시	-	529	△3.13	△1.05	△2.8	10.39

주: 1.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의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감률 및 청년순이동률은 4년전 대비 당해년 인구·이동률로 계상하나 이 표의 연평균증감률은 '22년부터 '25년까지 매년 증감률의 평균값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인구밀도는 2024년 행정구역면적 대비 총인구 규모이며, 인구는 해당연도 연앙인구(7월) 기준
3. 청년순이동률은 3년간(2022~2024년) 연평균순이동률을 의미하며 재정자립도는 4년(2022~2025년) 간 평균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를 의미

자료: 국가통계포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기존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활용한 인구감소지수 산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2020~2024년 자료를 바탕으로 지수가 높은 순위대로 89곳을 확인해보면, 기존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2), 대구(1), 강원(2), 전남(1) 일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반면, 부산(2), 인천(1), 경기(2), 경남(1)의 6개 지자체가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 관련연구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인구감소지수 표준화 점수를 기준으로 89개를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16~'20년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이후로는 인구감소 변화율이 완만해짐에 따라 현재 동일 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개 이상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 그런데 이는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청년 순유출 감소, 출생률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한 지자체로 하여금 역설적으로 재지정 평가 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정책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서 지원이 중단되어 적정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저해할 수 있고, 정책성과가 인센티브 제공이 아니라 지원의 단절을 야기한다면 자치단체들은 역설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구조적 인구감소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 중단이 발생할 경우, 이전보다 더 심화된 인구유출과 지역 소멸 위험에 다시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 지방소멸대응 정책은 중장기적 시점의 추진이 필요하므로 성과 유지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점진적 지원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성과를 보이는 지역에는 지정 해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 지원 축소 및 사후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성과 유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정책 동기를 강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등 정책적 연속성을 고려한 지정 및 해제 기준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 나아가 인구감소지역의 위험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멸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도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정책 대응을 통해 고위험지역으로의 전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들 지역을 주변 도시와 연계된 중간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거나 인구 유출을 완충하는 인구유출 방지 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데 현재와 같은 대상 지역 지정 및 관리 방식으로는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면밀한 사업 평가 필요 등

- 국회예산정책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분석 / 2025.10.) -

가. 현황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인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사업 대상(군) 주민등록 거주자에게 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703억 3,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 동 사업 예산은 공모 방식을 통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에서 6개 군(23.7만명)을 선정한 후 1인당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중 6만원을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년간(2026~2027년)의 시범사업 추진 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구 분	계 획
도입방안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69개) 중 지역 여건,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군 선정, 2년간('26~'27) 시범사업 추진 *사회적 논의 및 정책효과 성과평가를 거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본사업 전환 검토('27)
사업대상·규모	인구감소지역 군(69개) 중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국비 예산 범위(1,703억*) 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 당 평균 인구수(39,430명) 기준 6개 군 규모(국비 40%)
지원내용	일정 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제외자(안): 병원 등 시설 입소자, 직업군인 외 군 복무자, 실거주 미확인자 등
국고 보조율	인당 6만원을 정액 지원(농어촌기본소득의 최소 10% ~ 최대 40%)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부담으로 인당 15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국비 지원액은 인당 6만원 정액 지원
소요예산	시범사업 2년간('26~'27) 국비 3,406억원, 총사업비 8,516억원 이상(지자체별 지방비 분담률에 따라 상이) 소요 * (시범사업) 군 당 평균 인구수 39,430명 × 15만원/월 × 12개월 × 6개 군

구 분	계 획
산출내역	○ 민간경상보조(320-01) : 337백만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비(337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70,000백만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개 군(23.7만명)×15만원×12개월×40%=170,00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유형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형과 지역재원창출형으로 구분되며, 지자체는 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일반형은 지역발전지수가 낮아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활력 촉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지역재원창출형은 지역의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창출한 이익을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인 유형으로, 사업 신청 단계에서 지자체에서 지역자산 활용하여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추진체의 구축 현황과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형]

구 분	계 획
일반형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발전지수가 낮아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활력 촉진이 필요한 지역
지역재원 창출형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지역 (예시)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공유자원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화하여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지역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모 방식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하였고,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71%)에서 사업을 신청하였다. 이후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0일에 다음과 같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7개 군을 선정하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7개 군]

지역	유형	지역별 특성
경기 연천	일반형	· 농촌 기본소득 최초 도입('22, 청산면) 등 경험과 연계하여 군 단위 확대 시 효과 면밀 분석 기대 · 그간 접경지역 규제에 따른 지역 발전 저하,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효과 검증
강원 정선	지역재원 창출형	· 관광·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산간 고원의 농산촌 지역 대상 정책효과 검증 · 강원랜드에 투자한 주식배당금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 제시
충남 청양	일반형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으로 '다-돌봄' 사회서비스와 기본소득 간 연계로 선순환 효과 기대 · 자본 역외 유출 방지, 관내 소비 증진 등 '스마트청양 운동'과 연계한 순환경제 활성화 검증
전북 순창	일반형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편 복지 확대 및 관련 정책 연계를 통한 인구 유입 등 효과 선제적 증명 · 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 지역(농가인구 42.5%, GRDP 농림어업 24.2%) 활력 제고 효과 검증
전남 신안	지역재원 창출형	· 햇빛·바람 연금(재생에너지 발전 이익 공유화)을 지자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 검증 · 천여 개 섬으로 구성된 어촌지역 활성화 등 기본소득 정책효과 검증
경북 영양	지역재원 창출형	· 대규모 풍력발전단지(328MW) 조성, 풍력발전기금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 지리적 폐쇄성이 높고 인구가 적은(1.5만 명) 농산촌 지역 대상 정책효과 검증
경남 남해	일반형	· 청년 유입 기반 기조성, 주민-소상공인-군 간 상호협력 체계와 기본사회정책 연계 시너지 · 수도권 및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소멸 고위험 농어촌 지역 정책효과 검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선정 지역과 인구, 지방 자립도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 지역을 통한 비교 연구를 병행하여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 확대를 위한 기본소득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 동 사업의 대상인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개의 지정 지표와 가중치를 종합 고려하여 종합지수를 산정한 후 종합지수가 0.2 미만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기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정 전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시·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구(11개 시도 89개 시·군·구)
대구(1)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0)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5)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남(6)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7)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0)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0)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동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 모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성과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기본소득 사업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농어촌과 기본소득 지급 유무 외에 인구, 소득 등 외생변수가 유사한 비교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비교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통해 인구변수와 재정변수를 토대로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들을 군-Ⅰ부터 군-Ⅳ까지 유형화하고 있는바, 인구감소지역 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7개군과 같은 유형에 있는 군들은 다음과 같으며, 비교대상 지역 선정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재정자립도, 인구 등이 유사한 지역]

(단위: 억원, %, 명)

유 형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역 / 비교대상 지역	재정규모[1]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	재정자립도	인구
군-Ⅰ	경기 연천군	6,694	571	484	4,644	15.29	40,866
	경기 가평군	6,607	662	328	4,103	17.11	62,527
군-Ⅱ	전남 신안군	7,095	357	130	6,327	6.74	38,173
	전남 담양군	5,418	383	266	4,465	11.30	44,623
	전남 해남군	10,925	471	329	7,737	7.82	63,120
	전북 고창군	8,826	385	479	7,032	9.54	50,982
	전북 부안군	8,567	373	622	6,440	9.61	48,066
군-Ⅲ	경남 남해군	7,501	304	330	4,806	10.04	39,832
	경남 하동군	6,457	322	287	4,915	9.79	40,765
	경남 산청군	7,045	330	353	4,859	10.48	33,259
	경남 함양군	7,128	335	369	4,906	10.39	36,131
군-Ⅲ	충남 청양군	6,230	290	254	4,306	9.32	29,658
	충북 영동군	5,841	317	369	4,036	11.80	43,551
	충북 괴산군	5,263	338	278	4,230	10.65	36,252
	충북 단양군	4,569	296	271	3,331	12.29	27,352
군-Ⅲ	전북 순창군	5,724	245	216	4,408	8.26	26,822
	전남 고흥군	9,486	342	323	7,837	6.36	60,190
	전남 함평군	5,442	273	219	4,321	8.54	30,010
	전남 장성군	5,835	438	618	4,417	17.63	42,026
	전남 완도군	6,673	275	216	5,650	7.21	45,631
군-Ⅳ	강원 정선군	6,592	460	430	4,226	14.47	66,515
	강원 영월군	6,580	308	521	4,795	13.14	36,721
	강원 화천군	4,413	157	196	3,328	8.18	22,922
군-Ⅳ	경북 영양군	4,713	133	138	3,465	6.08	15,328
	경북 청송군	5,109	200	200	4,205	7.91	23,716
	경북 영덕군	6,596	271	275	4,989	7.72	33,210
	경북 봉화군	6,676	218	199	4,837	7.28	28,836

주: 1) 2025년 기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기금임
1. 2025년 9월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둘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방식으로 수행될 계획인바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종전 실시하던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량을 축소하는 등의 영향이 예상되므로 사업성과 평가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바 2021년~2025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7개 군의 연도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다음과 같다.

[2021~2025년 지역사랑 상품권 연도별 발행액]

(단위: 백만원)

지자체		연도별 발행액				
광역	기초	2021	2022	2023	2024	2025[1)]
경기	연천	10,533	24,520	15,815	18,313	20,000
전남	신안	19,425	11,719	6,618	4,547	6,600
경남	남해	35,459	26,700	15,555	19,767	21,000
충남	청양	10,152	20,228	18,603	15,585	4,246
전북	순창	15,000	17,136	26,865	28,405	30,000
강원	정선	32,067	32,019	11,318	14,553	23,000
경북	영양	9,000	11,350	11,652	9,762	8,400

주: 1) 2025년은 계획 기준임
자료: 각 자치단체 제출자료

○ 인구소멸지역은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 여력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수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종전 실시하던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량을 축소하는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

○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회적인 소득 재분배의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내 산업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자생적인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정책수단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종전 실시하던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량을 축소하는 등의 영향을 사업평가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도와 시·군·구간 부담비율 협의를 완료하여 공모에 응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 청양군의 경우 아직 시·도와의 구체적인 지방비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후 사업 관리를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액은 1인당 6만원으로 정액 지원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1인당 15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국비 정액 지원액(6만원) 외의 기본소득은 시·도와 시·군·구가 합쳐서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 2025년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7개 군을 선정하면서, 2026년~2027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총사업비로 8,867억 5,000만원을 산출하였다. 이 중 국비 지원은 2년간 3,278억 6,700만원(37%), 시·도 지방비는 1,402억 1,700만원(16%), 시·군·구 지방비는 4,186억 6,600만원(47%)으로 산출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도와 시·군·구간 부담비율 협의를 완료하여 공모에 응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 기준, 충남 청양군의 경우 아직 시·도와의 구체적인 지방비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후 사업 관리를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 **넷째, 2026년 사업 시행 전에 농어촌 기본소득과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농식품 바우처 등 기존에 정부에서 시행 중인 타 복지 정책과의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소득 인정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 현재 소득 인정액을 요건으로 지급하고 있는 타 복지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 현재 소득 인정액을 요건을 타 복지 제도들 중 몇 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 인정액을 지급 요건으로 하는 타 복지 제도]

구 분	생계급여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농식품 바우처
지급요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단독 228만원, 부부 364.8만원 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
지원내용	현금 지급 (최대 약 76.5만원/1인)	현금 지급 (최대 약 34.2만원/1인)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295,200원/1인)	전자바우처(카드 방식) 지급 (4만원/1인)
근거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에너지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료: 각 근거 법률과 보건복지부(2025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참고하여 작성

○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다른 복지 급여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게 되고, 소득 인정액이 변경되어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의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복지 지원이라는 기본소득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여지가 있다.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사업 시행 전에 농어촌 기본소득과 기존에 정부에서 시행 중인 타 복지 정책과의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의회